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주요국의 자원개발 규제현황

머리말

고유가와 원자재난으로 각국의 자원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세계자원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석유, 가스 등 에너지자원뿐만 철, 구리, 알루미늄 등 광물자원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산업핵심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해외자원개발 진출을 활발하게 추진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최근 향후 10년간의 해외자원개발 목표와 정책방향을 담은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고 에너지·광물자원의 자주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KOTRA도 지난해부터 주요자원부국의 자원현황 및 개발동향 자료를 시리즈로 발간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진출에 유용한 사전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최근 우리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진출이 활기를 띠면서 현지국의 투자법령이나 각종 규제현황을 사전에 올바로 파악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이번에 주요국의 자원개발 규제현황에 대한 조사를 새롭게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자료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러시아, 인도네시아, 브라질, 페루, 베네수엘라, 미얀마 등 최근 우리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7개 국가를 대상으로 자원개발 정책, 법령, 행정규제, 세제, 라이선스 규제현황 전반을 광범위하게 조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 공통적으로 자원개발진출시 환경관련 규정숙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잡한 세금구조, 특정 지역 및 광종에 대한 개발활동제한, 복잡한 법령 등도 개발 진출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미얀마와 같이 아직 개발초기 단계인 개도국의 경우 각종 법령 등이 미비한 상황이 오히려 현지정부의 자의적 규제로 행해질 가능성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베네수엘라처럼 자원민족주의의 대두로 국가에 의한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지역은 진출 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료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기업들에게 현지국의 자원개발규제에 관한 최신동향을 파악하는 참고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CONTENTS

목 차

제1부. 브라질

7	I. 외국인 자원개발 현황
10	II. 현지 정부의 자원개발 규제현황
10	1. 정치적 규제
10	2. 법적 규제
11	3. 세제상 규제
12	4. 기술 규제
12	5. 기타
13	III. 현지 진출 시 유의 사항

제2부. 페루

19	I. 외국인 자원개발 현황
22	II. 현지 정부의 자원개발 규제현황
22	1. 정치적 규제
23	2. 법적 규제
26	3. 세제상 규제
27	4. 기술 규제
28	5. 기타
31	III. 현지 진출 시 유의 사항

제3부. 베네수엘라

35	I. 외국인 자원개발 현황
39	II. 현지 정부의 자원개발 규제현황
39	1. 정치적 규제
40	2. 법적 규제
41	3. 세제상 규제
41	4. 기술 규제
41	5. 기타
42	III. 현지 진출 시 유의 사항

제4부. 호주

- 47 I. 외국인 자원개발 현황
- 49 II. 현지 정부의 자원개발 규제현황
 - 49 1. 정치적 규제
 - 51 2. 법적 규제
 - 59 3. 세제상 규제
 - 61 4. 기술 규제
 - 61 5. 기타
- 62 III. 현지 진출 시 유의 사항

제5부. 미얀마

- 65 I. 외국인 자원개발 현황
- 66 II. 현지 정부의 자원개발 규제현황
 - 66 1. 정치적 규제
 - 67 2. 법적 규제
 - 70 3. 세제상 규제
 - 70 4. 기술 규제
 - 71 5. 기타
- 72 III. 현지 진출 시 유의 사항

제6부. 인도네시아

- 75 I. 외국인 자원개발 현황
- 76 II. 현지 정부의 자원개발 규제현황
 - 76 1. 정치적 규제
 - 76 2. 법적 규제
 - 77 3. 세제상 규제
 - 78 4. 기술 규제
 - 78 5. 기타
- 80 III. 현지 진출 시 유의 사항

제7부. 러시아

83	I. 외국인 자원개발 현황
86	II. 현지 정부의 자원개발 규제현황
86	1. 정치적 규제
87	2. 법적 규제
88	3. 세제상 규제
89	4. 기술 규제
90	5. 기타
91	III. 현지 진출 시 유의 사항



브라질

- I. 외국인 자원개발 현황
- II. 현지정부의 자원개발 규제현황
- III. 현지 진출 시 유의 사항

I. 외국인 자원개발 현황

□ 브라질 자원개발 시장의 특징

- 브라질의 자원개발 시장은 지난 1990년대 과감한 문호개방 정책에도 불구하고 다국적기업의 참여가 저조했음.
- 국제원자재 가격 인하, 브라질 경제상황 불안, 브라질의 자원개발 관련 법률 및 제도 미비 등이 주요 원인이 됨.
- 그러나 2003년 초 룰라 정부 출범 이후 광물자원 및 에너지 자원 개발을 위한 정부정책이 강화되고, 특히 2003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제적인 원자재 난으로 자원개발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국적기업의 브라질 진출이 본격화됨.
- 최근 국제 원자재 수요의 급증으로 세계 각국이 자원공급원 확보에 나서면서 브라질의 자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
특히 고품질의 철광석 확보를 위한 다국적 철강회사들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유전개발을 위해 실시한 국제입찰에 예전보다 3~4배 많은 석유개발 기업이 응하는 등 석유개발 분야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고 있음.

□ 외국인 투자 현황

- 외국인 투자가들의 브라질 자원 주요 관심분야는 석유, 천연가스, 철광석, 철강, 석탄, 금, 구리, 다이아몬드 등임.
- 브라질 자원개발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외국기업으로는 미국의 Enron, ExxonMobil, Newmont Mining Corp, Placer Dome, Royal Dutch/Shell, ChevronTexaco와 영국의 Anglo American, Billiton,, Rio Tinto, 스페인의 Iberdrola, 포르투갈의 EDP, 호주의 BHP, 캐나다의 INCO, TVX Gold, 아르헨티나의 YPFA, 중국의 SBGC 등이 있음.

- 철광석 분야에서는 중국의 수강그룹, 일본의 신일본제철, 유럽의 Arcelor, 영국의 Corus, 한국의 포스코 등이 CVRD와 철광석 장기구매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대규모 제철회사 건설을 공동 추진 중임.
- 석유 부문에서는 현재 다수의 석유 메이저가 브라질 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로브라스(Petrobras)와 합작투자 형태로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석유부문 투자총액의 75%는 Petrobras에 집중되어 있으며, 25%는 외자기업과 국내의 민간기업이 브라질의 석유프로젝트개발에 459억 헤알(213억 달러)의 투자를 하고 있음. 이 사업의 대부분은 Rio de Janeiro주에 투자되며, 그중 85% 가 Campos 광구 개발에 사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석유부문에 대한 다국적기업별 투자〉

기업명	광구	투자액 (백만 달러)	1일 생산량예상 (천 배럴)	생산개시예정
Devon	Polvo/Campos	400	50	2007년7월
Chevron	Frade/Campos	3,000	100	2009년
Shell	BC-10/Campos	1,500	100	2009년
Hydro	Pelegrino/Campos	400	100	2010년
Shell	BR-4/Santos	300	100	2011년

자료원 : IBP(브라질 석유원)

- 자원 개발 사업은 일반적으로 투자 규모가 크고 투자이익이 장기간에 걸쳐 나타난다는 특성 때문에 투자 리스크가 높은 편임. 따라서 외국기업은 브라질 내 자원개발기업과 지분 분산 참여 방식에 따른 전략적 합작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한편, 중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필요한 원자재를 조달하기 위해 브라질 진출을 서두르고 있음. 특히 중국은 브라질 내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앞세워 브라질 자원개발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음.
- 철광석 분야에서는 중국의 Bao Steel이 브라질 최대 광업회사인 발레 도 리오 도세(CVRD)와 공동으로 브라질 북부 마라냥 주에 14억 달러 규모의 슬라브 생산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철광석 장기구매도 크게 늘어나고 있음. 중국의 수강그룹이 CVRD와 2005~2012년 사이 1천130만t의 철광석 구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일본의 신일본제철은 2014년까지 7천만t의 구매계약을 체결했음. 유럽 지역은 Arcelor가 향후 5년간 2천만t, 영국의 Corus가 5년간 1천만t 구매계약을 체결했음.

□ 우리기업 투자 현황

- 우리기업들의 경우 포스코가 브라질 CVRD와 합작으로 철강원료생산 회사인 코브라스코를 설립, 성공적으로 운영중이며 동국제강은 CVRD, 이태리 Danieli사와 합작으로 7억불 규모 슬라브 공장(브 북부 쎄아라 주) 건설 중임.
- SK(주)의 유전개발 사업 참여
 - 2001년 미 업체와 공동으로 1개 광구 조광권 확보 탐사 활동 중
 - 2004년 8월 미 Deven 에너지와 공동으로 2개 광구 조광권 계약 등

II. 현지 정부의 자원개발 규제현황

1. 정치적 규제

- 브라질 정부는 1995년 헌법을 개정해 광물을 비롯한 자원 개발 시장을 개방한 이후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 일부 중남미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에너지 국유화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브라질의 모든 광물 자원은 원칙적으로 국가 소유이며 개발권자 에게는 채광권만을 허용하고 있음. 채광권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브라질 국적 자에 의해 설립된 기업에 한해 인정하고 있음. 현재 외국인 투자가 활발한 석유 및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개발사업은 국제입찰을 통한 조광권 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브라질의 에너지 정책 전반은 국가에너지정책위원회(CNPE)가 종합적으로 관장하고 있음. 이 가운데 광물 자원의 관리 및 생산 활동은 광물자원생산관리국(DNPM),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 업무는 석유관리국(ANP), 전력 발전소 관련 업무는 엘레트로브라스(Elektrobras)가 나누어 맡고 있음.
- 일반 광물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DNPM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사업은 페트로브라스가 주도하는 국제입찰을 통해야 함.

2. 법적 규제

☞ 국경지대 150km이내에는 외국인 자원개발 제한(Lei 6634/79)이 유일한 법적 규제임.

□ 자원개발 관련 기본제도

- 브라질의 광물자원개발과 관련된 기본법규는 광업관련 헌법조항과 광업법, 석유법임.

- 브라질 헌법은 국내에 매장된 모든 광물자원은 국가소유로 규정
- 개인과 기업은 단지 광물자원의 탐사 및 생산 활동에 참여 가능
- 1995년 헌법을 개정 외국기업의 광물자원개발 참여 허용
 - 97년 신 석유법을 제정 석유공사(Petrobras)의 석유산업 독점권 폐지(판매부문 제외)하여 동 사는 2002년 석유수입 및 정유제품에 대한 독점 상실
 - 석유개발은 탐사, 채굴, 정제, 수출입, 해상운송, 파이프 수송 등 7개 분야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 허용
- 광물자원의 관리와 광업활동의 감독은 광업에너지부 광물자원관리국(DNPM), 석유·천연가스 개발 관련 업무는 석유가스 청(ANP), 발전소 건설 관련 업무는 Electrobras가 관련 업무 관장
 - 에너지 정책은 국가에너지정책위원회(CNPE)가 총괄 결정.

3. 세제상 규제

- 자원분야에 대한 별도의 세제상의 규제는 없으며 브라질의 세금구조가 워낙 복잡하고 담세율이 높아 외국기업 브라질 투자진출 및 브라질 기업들의 운영상의 전반적인 애로사항이 되고 있음.
- 연방·주정부 조세정책의 불확실성으로 그간 외국기업들은 사업 참여를 다소 주저한 바 있음.
 - 2003년 Lula 정부 출범 후 제기됐던 탐사·생산 장비에 대한 연방세 면제제도(Repetro, 2007년 만기) 불연 장에 대한 우려는 2004년 ANP가 2020년까지 연장하여 해소
 - Rio de Janeiro 주정부는 2003년 수입생산 장비 및 원유생산에 대한 18% 세금부과 법안을 통과 후 외국기업의 반대로 시행 보류
 - ※ 브라질 석유의 약 80%가 리오 주 연안에서 생산.

4. 기술 규제

- 일반광물 개발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DNPM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인허가에는 일반 신청(broad application) 제도와 특별 신청(restricted application) 제도 두 가지로 분류
 - 일반 신청제도는 광물개발조사와 경제성이 입증된 광물의 채광 면허로 구분되고
 - 특별 신청제도는 ① 모래, 자갈 등 건축용 광물의 채광허가와, ② 소규모 광물의 채광승인제가 있음.
- 석유, 천연가스개발사업 참여는 Petrobras의 독점권이 폐지된 후, 국제광구 입찰을 통한 조광권 계약방식으로 참여

5. 기타 : 해당사항 없음.

III. 현지 진출 시 유의 사항

1. 기본 환경

- 세계적인 자원 확보 경쟁으로 브라질의 보유자원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급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세계 15위의 석유 매장국인 브라질은 '브라질 라운드'를 중심으로 석유 탐사 및 개발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외국 기업의 투자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브라질의 고품질 철광석을 확보하기 위한 다국적기업들의 투자도 확대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브라질 자원개발 시장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음.
- 그러나 브라질의 자원개발 시장은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함. 국제 원자재 수요 증가 등 시장 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나 자원개발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 산업이기 때문에 생산이 급속하게 늘어나거나 주요 자원소비국의 경기침체가 발생할 경우 국제원자재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는 위험이 항상 존재함.
- 따라서 고 수익-고 위험의 투자 대상인 브라질의 자원개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투자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따라서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

〈브라질 주요 자원개발기업의 집중도〉

자원 종류	집중도(CR3)	주요 기업(시장점유율)
석유/천연가스	100%	페트로브라스(100%)
철광석	89%	CVRD(62.1%), MBR(14.9%), Samarco Mineracao(12.3%)
알루미늄	87%	MRN(73.1%), CBA(9.4%), MC(4.7%)
구리	100%	Mineracao Caraiba LTDA(100%)
망간	94%	CVRD(76.2%), Urucum Mineracao(17.3%)
니켈	100%	Niquel Tocantins(65.3%), MSF(19.0%), Codemin(15.7%)
아연	100%	Cia Mineira de Metais(100%)

* CR3 : 자원개발 상위 3개사가 광물 생산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의 합계

*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브라질이 기본적으로 모든 자원의 소유권을 국가가 보유하고 있으며, 소수의 대기업이 각 자원별 개발권을 거의 독점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투자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음.

2. 진출방안

□ 브라질이 국제비교우위를 갖춘 분야로 진출

- 브라질은 일반 광물자원과 철강 산업에서 국제적인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석유산업에서도 국제경쟁력을 급속하게 키워가고 있음. 따라서 우리 기업의 브라질 자원개발 시장 진출은 브라질이 국제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철강과 비철금속 분야에서도 제련기술에서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과 브라질의 원료생산업체가 전략적 제휴 및 합작투자 설립을 통한 원자재 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바이오 디젤과 알코올 분야는 브라질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또 다른 대체에너지로, 앞으로 국제유가 상승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합작투자 및 지분참여 방식의 진출 적극 모색

- 브라질의 자원개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특정 기업의 단독투자 방식보다는 브라질 현지의 자원개발 대기업과 합작 투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 브라질은 1978년 이후 에너지 개발 분야에 관심을 기울여 왔으나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이 정부와 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로브라스(Petrobras)의 주도 아래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페트로브라스와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탐사 및 개발에 참여하거나 수입이 가능한 상황임.
- 고수익-고위험이라는 자원 개발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고 자원의 장기적, 안정적 확보를 위해 브라질 기업이 추진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 참여

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브라질은 현재 정부나 기업이 자본 부족으로 인해 외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 기업이 브라질에서 직접 사업을 벌이지 않더라도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지분 참여를 하는 방법으로도 상당한 수익과 자원 확보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연구 분야 투자도 적극적 고려대상

- 브라질은 현재 정부와 기업이 모두 자본 부족을 이유로 에너지 개발을 방치하고 있는 부분이 많음. 대학 등에서 대체에너지 개발과 관련한 연구가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해 진전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현지투자를 고려할 때 현지의 기존 업체와 제휴를 맺는 것도 좋은 방법이나 연구 분야에서 일정한 성과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와 제휴를 맺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임. 이 경우 연구자는 대부분 상품화 권리까지 보유하고 있어 향후 브라질 내에서 사업을 전개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연구 분야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생산, 시설투자에 대한 정부의 허가를 받는데 절대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관행 정립 필요

- 자원 및 에너지 개발 산업에 관한 한 장기적인 시각에서 브라질 정부 및 기업과 긴밀한 제휴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 점은 우리 기업이 브라질 내 현지 파트너를 선정할 때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최근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우리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로 비즈니스 능력이 떨어지는 파트너가 접근해올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함.
- 현지투자 규모에 따라 브라질 정부 및 업계의 파트너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임. 다시 말해 투자 규모에 따라 현지에서 차별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가능한 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려는 브라질 정부와 업계의 입장이 반영된 하나의 관례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다른 비즈니스 분야와 마찬가지로 자원 및 에너지 개발 분야에서도 현지 업계 또는 학계의 전문가를 통해 생산허가를 보유한 생산 업자를 찾아낸 뒤 중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함.
- 현지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브라질 경제사회개발은행(ANDES)이 전체 투자액의 최고 50%까지 지원하고 있음. 다시 말해 현지투자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을 BNDES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특히 자원 및 에너지 개발과 같이 리스크가 높고 장기간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 투자의 경우 거의 예외 없이 BNDES를 이용하고 있음.
- 브라질이 우리 정부나 기업에 대해 기대하는 역할을 역으로 이용할 필요도 있음. 브라질은 현재 석유 및 천연가스 외에도 대체에너지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나 아직 내수시장 규모가 작아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대체에너지 다소비 제품을 브라질 현지에서 생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브라질의 에너지 시장에 접근할 수도 있음.

[자료원]

브라질 에너지부	www.mme.gov.br
브라질 광물자원생산관리국(DNPM)	www.dnpm.gov.br
브라질 석유관리국(ANP)	www.anp.gov.br
브라질 광업협회	www.ibram.org.br
브라질 철강협회	www.ibs.org.br
브라질 금속협회	www.abmbrasil.com.br
발레 도 리오 도세(CVRD)	www.vale.com.br
국영석유회사 페트로브라스	www.petrobras.gov.br



페 루

- I. 외국인 자원개발 현황
- II. 현지정부의 자원개발 규제현황
- III. 현지 진출 시 유의 사항

I. 외국인 자원개발 현황

- 1990년 후지모리 대통령 집권 이후 줄곧 경제자유화 정책 일관 추진한 결과 대외 시장개방, 국영기업 민영화 등으로 중남미에서 비교적 개방적인 투자 환경 국가 중의 하나로 변모
- 법제도적으로 외국인투자에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외국인투자는 국가경제의 중요한 축을 구성하며 2007년 GDP 중 외국인투자 비중이 20%에 달할 전망
- 시대별 대페루 외국인투자 집중 부문은 다음과 같음.
 - 1987~92 : 광업
 - 1993~05 : 통신, 제조업, 금융업, 광업, 에너지, 무역업
- 광물 등 자원개발 분야 외국인투자 유치는 후지모리 전대통령 정부 1기인 '92년부터 적극 추진하였으며 광업 분야 외국인투자는 2001년 이후에도 급증 추세

〈연도별 대페루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분야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농업	0.5	18.5	15.9	2.3	0	0	0	0	0	0
광업	85.4	143.5	288.8	34.9	5.1	3.1	0.9	95.9	502	577.1
수산업	0	0	0	0	0	0	0	4.5	4.5	115
석유	3.4	0	0	0	60	50	0	0	0	0
임업	0	0	0	0	0	0	0	0	0	0
합계	89.3	162.1	304.7	37.2	65.1	53.1	0.9	100.4	506.5	692.1

(자료원 : ProInversion)

〈연도별 대페루 외국인투자 누계액〉

(단위 : US\$백만)

분야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농업	44.4	44.4	44.4	44.4	44.4	44.4	44.4
광업	1,698.0	1,703.1	1,706.3	1,707.1	1,803.0	2,305.0	2,882.2
수산업	5.5	5.5	5.5	5.5	10	14.5	129.5
석유	97.9	157.9	207.9	207.9	207.9	207.9	207.9
임업	1.2	1.2	1.2	1.2	1.2	1.2	1.2
합계	1,847.0	1,912.2	1,965.3	1,966.2	2,066.6	2,573.1	3,265.3

(자료원 : ProInversion)

- 후지모리 정권 시절(1990~2000) 광업을 전격적으로 민영화하면서 광업이 페루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 시작했는데, 2005년의 경우 광업이 GDP의 6.6%를 차지했고 수출액의 55%를 점유하였음.
- 페루에서는 일일 채굴량에 따라서 광산을 대형, 중형, 소형으로 구분하는바, 대형은 하루 5천 톤 이상 생산하며 중형은 350~5000톤, 소형은 350톤 미만의 광산을 의미
- 대형광산에서 전체 채굴량의 95%를 생산하고 중형과 소형에서 각각 4%와 1%를 채굴함.
- 페루가 가장 많이 생산하는 광물은 동으로서 Antamina, Southern Peru 그리고 BHP Billiton Tintaya 등과 같은 회사가 대부분 생산함.
- 철 생산업체는 Shougang Hierro Peru 단 1개사로 생산량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
- 은의 경우 Volcan, Buenaventura, Ares, Antamina, Los Quenales 그리고 Atacocha등에서 페루 전체 은 생산량의 54%가 생산
- 주석 생산도 꾸준한 성장 추세이며 MINSUR사가 생산을 독점하고 있음. 금의 경우에는 Yanacocha, Barrick Misquichilca, Ares 그리고 Buenaventura사가 전체 생산량의 72%를 차지하고 있음.

- Volcan, Atacocha, El Brocal, Los Quenales, Chungar 그리고 Milpo사가 전체 63%를 생산하는 납의 경우 약간은 생산량이 주춤한 상황
- Volcan, Antamina, Los Quenuales, Milpo, Atacocha 그리고 El Brocal 등과 같은 회사들이 전체 아연 생산량의 72%를 담당
- 우리나라의 경우 SK가 Camisea 유전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고, 석유 공사, SK, 대우 등이 원유를 생산 중에 있으며 LS Niko 및 광업진흥공사도 페루 Marcona 동광산 개발참여를 위해서 페루에 주재원을 각각 파견해 활동 중임.
- 후지모리 정권 시절 광업을 전격적으로 민영화시킨 관계로 현재 페루에서 운영되는 모든 광산은 100% 민간 기업인데 외국자본이 페루 광업을 이끌어 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II. 현지정부의 자원개발 규제현황

1. 정치적 규제

- 페루헌법은 자원은 원칙적으로 국가 재산이며 그 이용 또한 국가권 하에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자원의 활용 및 양도를 규정할 수 있음을 명시
 - 따라서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적, 또는 자의적 판단에 의한 외국인투자 자원개발 관련 규제는 허용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국가는 환경보존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부합한 자원개발을 권장함.
 - 따라서 외국인투자를 통한 자원개발의 경우 이러한 환경보존이하는 기준에 합치하게 실시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
- 국가는 사유재산권의 불가침성을 보장하고 사유재산권이 법률 테두리 내에서 공공선과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함.
- 국가안보 및 법률로 규정한 공공의 필요 이외에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으며 법률로 침해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실시하도록 규정
- 또한 페루헌법은 페루 내국인, 외국인 구별 없이 투자자는 평등하게 대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국경으로부터 50km 거리 이내에 광업, 토지, 삼림, 수자원, 연료, 에너지 등을 직접 간접적으로, 개인으로든 단체로든, 개발하거나 개발할 권리를 얻을 수 없으며 그렇게 할 경우 국가가 이를 박탈함.
 - 그러나 국무회의가 승인하고 법률로 명시 공표한 경우 그러한 개발을 허용할 수 있음.
- 국가안보와 관련될 경우 법률로써 일정한 재화의 획득, 소유, 개발, 이전과 관련된 규제, 금지 등을 임시적으로 규정 가능

- 페루정부는 정치적으로 자원개발과 관련,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규제 또는 차별을 하고 있지 않으며 세계 모든 나라의 투자자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음.
- 광산기술이 발달하고 인공위성을 활용한 광물 탐색이 용이해져서 세계적인 광산회사인 Newmont(미국), Barrick(캐나다), BHP Billiton(호주) 그리고 Phelps Dodge(미국) 등이 자원 보유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수혜국가 중 한 곳이 바로 페루라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최근에는 이와 같은 외국인투자 유치에 장애가 생겨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첫째는 치안불안, 두 번째는 페루 정부의 지나친 과세 정책을 꼽을 수 있음.
- 2002년 6월 Tambogrande 주민 중 94%가 반대해 Manhattan Minerals (캐나다)사가 추진하던 San Lorenzo Valley, Piura에서의 금광 개발이 물거품이 된 바가 있으며 2004년 9월에는 Newmont(미국)사의 Yanacocha 광산이 주민의 심한 반발에 직면해 Cajamarca 의 Cerro Quilish 금광 개발을 중단해야만 했음. 이와 같이 환경을 의식한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인한 외국인 투자 이탈은 페루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음.
- 과거에 광물 가격이 낮아서 외국인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등 외국인 투자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던 페루 정부는 이제는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외국인투자 유치가 활발하게 진행되자 최근 로열티를 지급하라는 법안을 통과시켜 외국인 투자자의 반발을 사기도 함.

2. 법적 규제

- 페루 투자법규는 외국인 투자자도 국내투자자와 동등한 대우를 한다는 내외국인 동등대우 원칙을 기본으로 하며, 투자업종도 언론분야 외에는 제한이 없는 완전 개방에 가까운 외국인 투자 유치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자원개발 분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어도 법규범만을 두고 볼 때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모든 자원개발 활동을 외국인투자자에 개방하고 있음.

- 외국기업의 페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나 페루의 경우 내외국인 동등대우 원칙 하에 이러한 조치가 전혀 없음.
- 오히려 2006년 7월 알란 가르시아 신정부가 들어서자 최근 광물 가격이 엄청나게 오른 점을 감안하여, 외국인투자 광산업체에게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기 위해 협상에 나올 것을 요구함으로써 반발을 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외국인투자 유치 담당기관은 Proinversion(투자진흥청)으로 자원개발 관련 외국인투자는 투자진흥청에 등록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ProInversion의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음.
 - 투자유치전략 수립, 잠재 투자가 교섭, 프로젝트 및 공공분야 외국인 기업체 투자 유치
 - 국가경제 계획 및 정책 범위 내에서 외국인투자업체 관련 정책 수립 및 실행
 - 외국인투자액 집계, 외국인투자업체 등록, 투자승인 및 법적 안정성 보장
 - 투자 관련 국제협정 체결을 위한 조정 및 교섭
- 1993년 페루헌법은 민간투자, 특히 외국인투자와 관련 다음 사항을 보장하며 이것은 자원개발의 경우에도 적용됨.
 - 시장경제와 경제다원주의 내에서의 자유로운 민간 주도권 보장
 - 노동, 기업 활동, 상업, 산업 활동의 자유
 - 경제 활동에서 보조자로서의 정부역할 정의
 - 자유경쟁 보장 및 시장독점 방지
 - 계약 체결의 자유
 - 계약과 법률을 통한 정부의 법적 안정성 보장
 -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자의 대등한 대우
 - 국가 관련 분쟁을 국내 또는 국제재판소에 상정할 가능성
 - 외국화폐의 자유로운 소유 및 처분 보장

- 사유재산권의 불가침성보장
 - 개인 소유권 몰수의 경우 미리 적정한 보상 지불
 - 조세의 평등성
 - 몰수 성격의 세금 불 용납
-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기본 원칙은 내국인대우 원칙으로 외국인은 경제활동을 하는 데 제한이 없으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음.
 - WTO 규정에 의해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외국인 투자에 대해 선별한다거나 생산성 요건 충족 요구를 할 수 없음.
 - 투자 가능 분야는 공공질서 유지, 국가안전에 관련된 극소수 분야만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음.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같이 재산을 소유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국경으로부터 50km 내의 지역에서는 광산, 땅, 숲, 물, 연료, 에너지원 등을 소유하거나 개발하지 못함. 단, 공공필요로 예외를 둘 경우 국무회의 승인 법령으로 예외 인정
 - 위생, 공업안전, 환경보호, 보건 관련 규정을 제외하고 그 외에 생산방법, 생산 지수 등을 규정하거나 특정한 원자재나 생산기술 과정을 금지 또는 강요한다든지, 회사활동에 간섭하는 법 모두 폐지
 - 외국인 자원개발 투자기업의 기본권은 다음과 같음.
 - 내국인에 비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상업과 산업, 수출과 수입의 자유
 -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국내에서 창출한 이익, 또는 배당금을 자유로이 해외 송금할 수 있는 자유
 - 외환시장에서 가장 유리한 환율로 환전할 수 있는 권리

- 투입자본을 본국으로 반환할 권리(주식 양도, 자본 감축, 자본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할 때)
- 내국인기업과 동일하게 제한 없이 대출받을 수 있는 권리
- 기술계약과 로열티 송금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권리
- 내국인 투자자의 소유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자유
- 투자 보호에 필요한 보험계약을 외국에서 체결할 수 있는 권리
- 페루정부와 법적안정성 보장 협정을 체결할 권리

3. 세제상 규제

- 내외국인 기업 모두에게 차별 없이 동일한 조세율 적용
- 주요 조세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영업세	부가가치세(IGV: 또는 일반 판매세, 다른 중남미국가에서는 IVA라고 하기도 함)로서 페루 내에서 재화 판매, 서비스 공급 및 이용, 건축 계약, 건설 회사에 의한 최초 부동산 매각 및 수입제품 등에 대해 부과함. 부가가치 세율은 원래 17%이며, 이외에 도시 진흥세 2%가 더해져 총 19% 임.
소득세	페루의 소득세는 개인 및 기업 국적 또는 소득원에 관계없이 페루 거주 납세자의 연간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며, 국내에 거주하지는 않으나 페루 국적의 개인 또는 사업체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도 부과함. 사업체의 경우 제3자와의 거래를 통해 발생된 이득에 대해 부과될 뿐만 아니라 매 사업 연도 말 현재 계산되는 물가상승에 따른 이득에 대해서도 부과함. 특히, '94년부터는 배당금을 비롯하여, 기업의 이윤분배에 따라 발생된 여하한 형태의 소득에 대해서는 이를 과세소득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음.
순자산 특별세	페루 국내거주 사업체는 이윤을 발생시키든 않든 간에 순 자산의 0.5% (종전의 2% > 1.5%에서 채차 하향 조정 됨)에 해당하는 순 자산특별세(종전의 최저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1997년 5월 4일부로 발효한 법률 제26777호에 따르면, 순 자산에 대한 특별세가 신설된 반면 최저소득세를 폐지

4. 기술규제

- 자원개발 관련 기술면에서의 규제나 어떤 특정한 국가의 기술을 선호하는 등의 제한은 없으며 어디까지나 투자업체 책임 하에 자원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그러나 환경보존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이를 법제도로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예를 들어 환경 및 자연자원법령 제613호는 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자의 경우 반드시 환경영향연구보고서(EIA)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가 그러한 경우임.
 - 관개, 댐, 수력발전 등
 - 사회 간접자본 건설
 - 도시사방공사
 - 각종 관 건설
 - 에너지 개발
 - 광업, 수산업, 임업 등 프로젝트
 - 화학공업, 석유화학공업, 금속공업, 제철산업 등 유해물질 배출 산업
 - 농업개발 등
- 환경영향보고서에는 해당 프로젝트 실시예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직간접 물리적 및 사회적 결과에 관한 분석 및 그 대책도 제시해야 되며 보고서는 해당 작성능력 및 자격을 인정받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만 수행할 수 있음.
- 고고학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적, 유물이 위치해 있을 경우 이 지역은 자원개발 대상 지역에서 제외됨.

- 환경보존과 관련, 무분별한 유해물질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미리 허가받은 장소에만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강이나 바다로 버리는 물질의 경우 인간건강이나 주위생물에 대한 위협요인을 제거할 의무가 있음.
- 그 밖에도 자원개발 분야별로 마련된 환경보전 세부규정들이 있어 이것을 미리 파악하고 준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

5. 기타

- 외국인 자원개발 분야 투자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규제는 없으나 일부 투자의 경우(특히 광업) 외국인 투자업체가 지역 주민과의 갈등으로 협상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음.
- 2007년 7월 집권한 Alan Garcia 정부는 출범 시에는 자원의 국유화나 외국인 투자제한조치 등은 없을 것이며 페루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의 이익은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나 집권 후부터 외국 계 자원개발 기업이 페루정부와의 계약 체결 후 국제자원가격폭 등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발적으로 개발지역 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비용을 분담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음.
- 이에 따라 자원개발기업들은 자원개발협회(SNMPE, Sociedad Nacional de Minería, Petróleo y Energía)를 중심으로 정부와의 협상을 거쳤으며 43개사가 올해부터 5년 동안 매년 5억 솔(약 1.6억 불)씩 총 25억 솔(약 8억 불)을 페루정부에 헌납기로 한 바 있음.
- Programa Minero de Solidaridad con el Pueblo(광산기업과 지역주민 결속 프로그램)로 명명한 이 기부금은 자원개발 기업이 개발하는 지역 내 주민교육, 보건, 환경, 5세 미만 아동 영양증진 등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며 이 기부금 사용을 위해 해당 지방정부는 투자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자발적 기부금을 납부기로 한 43개 업체 중 페루 최대 동 생산업체인 Antamina를 시작으로 다수 업체가 페루정부와 기여금 납부 협약을 마친 것으로 알려짐.
- 이 기부금은 형식상으로는 자원개발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것처럼 모양을 갖췄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부강요에 의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자원개발업체에게는 추가부담이 아닐 수 없음.
- Alan Garcia 정부는 선거공약 중 하나로 빈민 복지향상을 내걸었고 집권 후에는 이의 실현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결국 자원개발 기업에게 압력을 가하는 교묘한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자발적 기부금은 기업의 연간 총이익 중 법인세(30%)를 납부한 후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업체별로 3%를 분담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2%는 개발지역 인근주민을 위한 기금으로 1%는 자원개발 기업이 위치한 도 지역주민을 위한 기금으로 납부할 예정이라고 함.
- 한편, 업체 부담을 덜어 주고 기부금 납부를 보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 기존에 Royalty를 납부하는 기업은 이들 기부금 중 최대 64.4%까지를 감액해 주고 페루가 생산하는 금, 은, 동 등 9개 광물을 선정해 최근 10년 동안의 이들 광물 국제 평균가격보다 현시가가 낮은 광물을 생산하는 기업은 기부금을 면제해 줄 예정임.
- 자발적 기부금이라는 명목으로 자원개발기업에게 강요된 준조세 형식의 기부금에 대해 현지 진출 자원개발업체들은 이와 같은 예기치 않은 간접적인 과세가 바로 중남미 국가에 투자하는 리스크 중 하나라고 평가하고 있음.
- 물론 자발적 기부금은 볼리비아나 베네수엘라에서와 같은 신정부의 갑작스런 자원국유화 선언보다는 매우 약한 것이지만 투자 시점에서 정부와 체결한 계약은 정권이 바뀌어도 신정부가 변경할 수 없다는 법을 지키면서 세금을 초과로 징수하는 교묘한 수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한편, 자금 분담에 참여기로 한 자원개발 기업은 금번 기부금은 국제광물가의 상승세에 따라 초과이익을 얻는 상황이어서 당분간은 납부에 큰 부담은 없겠지만 국제광물가격이 하락할 경우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반응임.

III. 현지 진출 시 유의 사항

□ 현지 법규파악 및 사전자문 필수

-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현지 투자법규, 자원개발 관련 법규범을 파악하는 일이며 이것을 위해서는 현지의 유명 변호사, 법률고문 등과 상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
- 경우에 따라서는 현지 자원개발 분야 기 진출 한국 업체의 조언을 받는 것도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페루는 인근 중남미국(예: 콜롬비아)과는 달리 자원개발 분야의 개방도가 매우 높고 1990년대 이후 완전한 민영화를 통해 내외국인 기업 간의 차별을 완전히 철폐시켜 놓고 있어 대규모 기업뿐 아니라 소규모 기업도 자유로이 참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여기에 바로 리스크도 있다고 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기술수준이나 해외영업 경험이 높지 않은 소규모 업체의 경우 현지 파트너의 말만 듣고 잠재적인 투자가능지역에 상세한 검토를 행하지 아니하고 성급한 투자를 하지만 막상 사후 이윤 및 원금회수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현지 기진출한 한국 업체로부터 사전 조언이나 협력을 얻는다면 손실을 최소화하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환경보전 노력 선행

- 더구나 페루는 개발도상국으로서 환경보존에 대한 인식이 높은 국가여서 자원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및 파괴를 최소화하는 데에 큰 역점을 두고 있음.
- 따라서 자원개발 투자 시 이러한 환경보존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큰 곤란을 겪게 되며 나아가서는 투자허가 취소, 제재 등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 위에서 보았듯이 환경영향분석(EIA)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며 나아가서는 자연환경뿐 아니라 인적환경, 사회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투자가 되

어야 투자의 효과를 최대화할 뿐 아니라 지역공동체와의 원만한 관계 내에서의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됨.

- 특히 페루가 미국과 체결한 FTA가 미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경우 최종 비준절차를 거쳐 발효하게 되는 바, 이 협정에서도 미국은 페루 측에 환경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페루도 이에 동의해 마침내 협정문을 개정하고 페루 의회는 이를 2007년 6월에 통과시킨 바 있는 것을 볼 때 앞으로 자원개발 분야 투자 시 내외국인 구별 없이 이러한 환경보존 노력을 엄격히 요구할 것으로 보임.

- 페루는 잉카문명의 중심지로 옛 유적이나 유물이 수시로 발굴되는 나라인 바, 자원개발 프로젝트가 주로 벽지나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유적을 훼손시키지 않을 것을 매우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

□ 현지 노동법규 준수

- 페루는 전통적으로 사회주의적인 영향이 강해서 피고용자 위주로 노동법규를 운영하고 있는 바, 현지의 노동법규, 사회보장제도 등을 면밀히 파악해 노사분규나 분쟁 등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특히 유의해야 됨.
- 수시로 노동부 공무원이 업체를 방문해 일하는 근로자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급여 수준 및 지급 문제, 근로조건 문제, 근로시간, 노사관계 등을 체크하며 여기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문제를 발견할 경우 고용주는 높은 처벌을 받거나 벌금을 물어야 됨.
- 빈곤층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을 볼 때 현지의 법은 “약자를 보호 한다”라는 정신이 지배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일단 근로자와의 문제가 생기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외국인 고용주는 무조건 패하게 되어 있으므로 현지에 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반드시 노동관계 변호사나 회계사의 자문을 받아서 노동법규를 충족시키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됨.



베네수엘라

- I. 외국인 자원개발 현황
- II. 현지 정부의 자원개발 규제현황
- III. 현지 진출 시 유의 사항

I. 외국인 자원개발 현황

1. 석유

□ 베네수엘라 석유공사(PDVSA)에 의한 국유화

- 전체 32 석유개발 광구 중에서 7개는 지분 100%, 일부 개발권은 지분 참여
 - 2006년 4월 1일(토) 베네수엘라 정부는 해외 다국적기업에게 양도되었던 32개의 석유개발 광구 중에서 7개 광구는 지분을 100% 소유하였으며 일부는 다국적기업에 20~40%의 지분을 배분하였음.
 - 지분을 100% 회수한 광구는 B2X 68/79, Mauipa, Sanvi Guere, Guarico Occidental, Quiamare-La Ceiba, Dacion, Jusepin 등 7개의 개발광구임.
 - 베네수엘라 정부에서 100% 환수한 광구권 중 Dacion(이탈리아), Jusepin(프랑스) 등 2개의 광구권 소유자는 원천무효를 주장하면서 반발하고 소송을 전개하고 있으나 PDVSA는 다국적 기업의 주장이 불합리하다고 반박하면서 경영권 몰수를 언급하고 있음.
 - 나머지 25개 석유개발광구 중에서 Kaki, Cabimas, Onado, Guarico Oriental, LL-652, Casma Anaco, Ambrosio, B2X 70/80, Caracoles, Intercampo 등은 석유 등 이외에도 주요 광물이 다량 함유된 국가전략지역으로 정부가 직접 운영한다고 발표함.

□ 외국인투자자 다국적기업은 PDVSA에서 배분한 지분만큼 참여

- 외국인 투자자인 다국적기업이 과거에는 PDVSA와 사적계약(私的契約)을 통해 원유를 시추, 개발하였으나 국유화이후 광구권 마다 지분에 의해서만 석유개발시장에 참여 가능
 - 지분 참여 후에도 다국적 석유투자기업은 소득세 50%, PDVSA에 로열티 34%를 지급해야 하며 지분권은 문제가 없는 한 해당 광구권에 대해 독점적 참여권한을 보유함.

- 민간기업의 지분권이 과거 투자금액에 따라 최고 40%에서 최저 20%로 제한되고 PDVSA가 60-80%까지 최소한 절반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은 베네수엘라 석유공사(PDVSA)로 넘어감.

□ 베네수엘라 내 석유개발단지 과거 소유권 및 지분 이동현황

〈소유권이 국유화된 석유개발단지〉

연번	석유개발단지	전(前) 소유주(主)	PDVS 지분(%)
1	Kaki	Inemaka(베네수엘라)	60
2	Cabimas	Suelopetrol(베네수엘라)	60
3	Onado	CGC(스페인)	60
4	Guarico Oriental	Teikoku(일본)	70
5	Mene Grande	Repsol(스페인)	60
6	Quiriquire	Repsol(스페인)	60
7	Boscan	Chevron(미국)	60
8	LL652	Chevron(미국)	75
9	Falcon Este	Vinccler(베네수엘라)	60
10	Falcon Oeste	Vinccler(베네수엘라)	60
11	Casma Anaco	Open(베네수엘라)	60
12	Colon	Tecpetrol(아르헨티나)	60
13	Urdaneta	Shell(네덜란드)	60
14	Acema	Petrobras(브라질)	60
15	La Concepcion	Petrobras	60
16	Mata	Petrobras	60
17	Oritupano-Leona	Petrobras	60
18	Pedernales	Perenco(프랑스)	60
19	Ambrosio	Perenco	60
20	B2X 70/80	Hocol(영국)	60
21	Monagas Sur	Harvest(미국)	60
22	Caracoles	CNPC(중국)	60
23	Intercampo Norte	CNPC(중국)	80
24	DZO	BP(영국)	60
25	Boqueron	BP(영국)	60

자료 : PDVSA

〈100% 국유화된 석유개발단지〉

연번	정부에 반납된 석유단지	전(前) 소유주(主)	PDVS 지분(%)
1	B2X 68/79	Hocol(영국)	100
2	Mauipa	Inemaka(베네수엘라)	100
3	Sanvi Guere	Terkoku(일본)	100
4	Guarico Occidental	Repsol(스페인)	100
5	Quiamare-La Ceiba	Repsol(스페인)	100

자료 : PDVSA

〈정부의 국유화에 소송중인 석유개발단지〉

연번	논쟁중인 석유단지	전(前) 소유주(主)	PDVS 지분(%)
1	Dacion	Eni(이태리)	100
2	Jusepin	Total(프랑스)	100

자료 : PDVSA

□ PDVSA의 민간기업 참여방안

- 주재국 국영석유회사인 PDVSA는 직접생산 외에도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에 의해 국내외 민간기업의 참여를 허용

민간기업 참여 방법

참여 방식	내 용	현 황
Operating Service Agreement (운영계약 방식)	○ 수익성이 낮은 한계유전의 개발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생산비가 높음. ○ 계약자는 생산원유 전량을 PDVSA에 판매	○ 현재 35개 계약 체결 ○ 동 방식에 의한 원유생산 1일 50만 배럴 수준
Profit Sharing Agreement (이익분배 방식)	○ 신규유전 개발 방식으로 계약자는 모든 개발비용을 부담함. ○ 상업적 가치가 있는 유전이 발견되면 계약자는 PDVSA와 joint venture 체결(PDVSA 지분 35%까지 보유)	○ 당초 19개사가 8개 광구에서 개발 추진 ○ 4개 광구(La Ceiba, San Carlos, Golfo de Paria Este 및 Golfo de Paria Oeste)에서 개발 성공 ○ 나머지 4개 광구는 원유 미 발견으로 계약 종료
Strategic Association (전략적 제휴 방식)	○ 오리노코 벨트(초중질유) 개발 방식으로 수익률이 낮고 장기간에 걸친 프로젝트에 적용 ○ PDVSA와 특별 joint venture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 기업을 설립하여 개발	○ 현재 4개 프로젝트 시행중 - Petrozuata 프로젝트 : ConocoPhillips사 참가, 1일 11.2만 배럴 생산 - Cerro Negro 프로젝트 : Exxon Mobil사 참가, 1일 12.1만 배럴 생산 - Sincor 프로젝트 : Totalfina(프랑스) 및 Statoil(노르웨이) 참가, 1일 15만 배럴 생산 - Hamaca 프로젝트 : Chevron Texaco사 참가, 1일 8만 배럴 생산

II. 현지정부의 자원개발 규제현황

1. 정치적 규제

□ 완전한 석유 주권 (Plena Soberanía Petrolera)

- 차베스 정부는 석유 등 에너지 자원에 대한 국가주권(soberanía nacional) 원칙에 따라 자원의 국가 소유권 재확인,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국가 통제권 강화 등을 통해 진정한 자원 국유화(auténticanacionalización)를 추진
 - 다국적 기업의 영업활동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베네수엘라 주권과 국내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임.
 - '99년 신헌법을 통해 PDVSA의 민영화 금지를 확립하고, '01년 석유법 개정 및 '03년 1월 석유산업의 진정한 국유화(la verdadera nacionalización petrolera) 선언에 이어 '04년 10월에는 완전한 석유주권(plena soberanía petrolera)을 천명하였음.
 - 개정 석유법은 외국기업의 로열티를 기존 1~16.66%에서 20~30%로 인상하고, 공동 합작투자 시 PDVSA의 참여지분을 51%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등 석유산업의 국유화를 강화하는 각종 조치를 도입

□ 국민자치에 의한 에너지 독립 (petróleo para el pueblo)

- 석유 등 에너지 자원을 국내 지역간 불균형 해소, 내생적 성장(desarrollo endógeno) 및 서민층 사회개발프로그램 실행 등을 위해 활용
 - 베네수엘라는 재정수입의 75%, 수출의 80%를 석유산업에 의존
- PDVSA는 경제사회개발기금(Fondespa : el Fondo para el Desarrollo Económico y Social del País)을 조성하는 핵심기관으로 선정
 - 교육, 보건, 의료, 생필품 염가 지원 등 서민층 사회개발프로그램(misión social)의 재원 확보
 - 지방의 내생적 성장 실현을 위해 개발 중심(NDE : Núcleos de Desarrollo Endógeno) 조성

- 도로, 철도, 지하철, 전력, 농업단지 등 사회 간접자본 조성 등
- 알루미늄, 철, 목재 등 여타 천연자원도 2013년까지 단순 원료 및 원자재 수출을 중단하고 가공에 의한 부가가치를 창조한 후 상품을 수출한다는 계획임.

□ 역내통합 및 반미정책의 도구

- 미국이 추진하는 FTAA에 대항해 차베스 대통령이 주장한 역내 통합기구인 ALBA(Alternativa Bolivariana para la America)속에서 석유, 가스 등 자국의 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중남미 통합을 추진(Petroamerica 실현)
- 자국 석유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의존을 탈피하고, 같은 좌익이념을 추구하는 쿠바, 이란, 중국, 인도 등 제3세계 및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관계강화책으로 적극 활용(oil diplomacy)

2. 법적 규제

□ 석유법

- 헌법 302조, 석유법 1-9조에 의해 베네수엘라 내 석유 및 탄화수소물의 소유권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보유하며 석유, 에너지부(Ministerio de Energia y Petroleo)가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통제함.
- 석유법 18조에 의해 정부가 자본참여, 유통, 생산, 공급 등 모든 것을 통제하며 법에 의해 규정된 사항만 민간로열티기업이 활동할 수 있음.
- 석유법 22조에 의해 민간기업의 활동은 정부에 의해 규제되고 정부가 최소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는 혼합기업(Empresas Mixtas)의 형태로만 활동할 수 있음.(*민간기업의 독립적인 경영은 원천적으로 불인정)
- 석유법 34조에 의해 정부와의 계약은 최소한 15년 이상 최대 30년까지만 인정하며 석유법 44조에 석유법 로열티는 30%를 납부해야 하며 비경제적인 개발지역에 한하여 로열티 20%를 인정함.

□ 가스, 탄화수소법

- 동법 7조에 의해 에너지부, 석유부에서 국가자본 참여에 대한 규정 서술
- 동법 24조에 의해 민간 참여기업 규제
 - 석유개발 프로젝트 보고서 에너지, 석유부로 제출 및 승인 필요
 - 민간기업은 최대 35년간 석유개발 프로젝트 참여 가능하며 추가 연장은 에너지, 석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대 30년 이상 연장 불가

3. 세제상 규제

- 석유법 48조에 의한 각종 과세
 - km²당 100 Unit의 지표세(Impuesto Superficial) 부과 및 초기 5년간 매년 2% 가산되고 5년 이후 매년 5% 가산
 - m³당 10%의 적정 소비세(Impuesto de Consumo Propio) 부과
 - 판매가격에 대한 총 소비세(Impuesto de Consumo General)를 30=50% 부과
 - 시추세(Impuesto de Extraccion)를 시추된 석유의 1/3을 과세
 - 수입등록세(Impuesto de Registro de Importacion)를 0.1% 과세

4. 기술 규제

- 석유법 66조에 의해 매 6개월마다 점검을 통해 환경과피 등 법에 저촉될 경우 50~50,000 Unit 과세 또는 폐쇄명령 가능

5. 기타: 해당 사항 없음

III. 현지 진출 시 유의 사항

☐ 한국과 베네수엘라 간 자원협력 현황

- 한국석유개발공사가 97년부터 운영계약 방식으로 Monagas 주 Onado 유전에서 1일 800배럴 생산하였으나 2006년 국유화 정책에 따라 국유화됨.
 - Compania General de Combustibles 및 Banco Popular de Ecuador와 합작 (지분 14.1%)
- 한국은 연간 평균 3.0-4.0천만 불 이외의 철강, 동 및 관련제품 수입
 - 주재국산 석유 수입은 전무한 상태

☐ 주재국 자원에 대한 우리업계의 관심 및 정보부족

- 세계 5~6위의 석유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송거리, 석유의 질(주로 중질유) 등을 이유로 우리 업체들의 관심밖에 위치
- 석유 외에도 천연가스, 철광석, 오리멀전, 알루미늄 등의 자원이 풍부한 나라이나, 우리 업계는 주로 가까운 동남아, 호주 또는 중동지역의 자원에만 투자를 집중

☐ 기타 자원

- 천연가스
 - 천연가스 매장량은 148조 ft³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매장량에 버금가는 정도가 동남부 오리노코 강 유역에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주재국은 경제성이 높은 천연가스 생산을 더욱 확대할 계획
 - 현재 주재국의 실제 생산량은 1일 60억 ft³에 불과하며 이중 1/3은 원유 생산을 위해 유정에 재 주입되고 30%는 연소되며 실제 소비는 35% 수준

○ 알루미늄

- 보크사이트 매장량은 52억 톤 정도이며 연간 알루미늄 생산은 60-70만 톤을 기록하고 있음. 이중 2/3 정도(41.4만 톤)가 해외로 수출되고 나머지는 국내 소비됨.
- 주재국 동남부지역에서 가이아나, 수리남에 이르는 지역은 세계 최대의 보크사이트 매장지역
- 일본은 현재 주재국 국영자원공사와 합작, Venalum이라는 회사를 설립('쇼와' 등 6개 일본회사가 20%, 주재국이 80% 참여)하고 생산량의 60%를 수입

○ 기타 광물자원에 대한 주재국 입장

- 원자재 수출을 가급적 금하고 베네수엘라 내에서 가공 후 부가가치 상품을 판매하겠다는 정책임.



호 주

- I. 외국인 자원개발 현황
- II. 현지 정부의 자원개발 규제현황
- III. 현지 진출 시 유의 사항

I. 외국인 자원개발 현황

- 전통적으로 호주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특히 광업부문은 외국인 투자가 가장 집중되는 분야임.
- 2005년 광업 부문 외국인 순 투자는 7,615백만 호주불로서 전체 순 투자가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서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음.
- 2005년 말 외국인 투자 누계 기준으로 볼 때 광업부문에는 총 59,200백만 호주불로 전체 외국인 투자 누계 액의 21.1%를 차지함.

〈업종별 투자유치 동향(2005년 말 누계)〉

(단위 : AUD 백만, %)

	금액	비중
1차 산업	60,177	21.4
농림수산업	977	0.3
광업	59,200	21.1
2차 산업(제조업)	54,202	19.3
3차 산업	153,578	54.6
전기·가스·수도	8,579	3.1
건설업	6,700	2.4
유통업	48,240	17.2
숙박·요식업	1,323	0.5
운수·통신	26,422	9.4
보험·금융업	40,573	14.4
부동산 및 비즈니스서비스	19,405	6.9
기타 서비스	2,336	0.8
기타	13,165	4.7
전체	281,121	100.0

자료원 : 호주통계청 2006

- 2006년 컨설팅 기업인 BEHRE DOLBEAR사는 국가별 자원부문 투자 위험도를 조사하였음.
- 경제/정치 시스템, 사회적 안정성, 관료주의 및 부패, 통화 안정성 등을 세부부문별로 위험도를 측정하였음.

- 동 조사에서 호주는 '가장 위험도가 낮은 국가'로 선정되었으며 이 같은 결과는 자원투자지로서 호주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보여줌.
- 특히 호주는 경제, 정치 시스템의 효율성과 투명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바 있음.

〈국가별 자원부문 투자 위험도 조사〉

*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도가 낮은 것임

순위	국가	경제 시스템	정치 시스템	사회적 이슈	허가 관련 지연	부패	통화 안정성	조세 체계	총점
1	호주	9	9	8	8	10	8	7	59
2	캐나다	10	9	6	5	10	9	7	56
3	칠레	9	8	8	7	8	6	5	51
4	미국	10	9	4	3	10	8	7	51
5	멕시코	7	8	5	8	6	6	8	48
6	브라질	6	7	6	5	4	6	6	40
7	그리스	8	8	2	2	5	9	5	39
8	아르헨티나	6	6	6	6	4	5	5	38
9	가나	6	5	5	7	5	5	5	38
10	중국	8	2	5	5	3	9	5	37
11	몽고	6	5	5	6	3	6	5	36
12	나미비아	6	6	4	5	4	4	6	35
13	탄자니아	5	4	4	7	3	4	5	32
14	페루	6	3	1	4	4	7	6	31
15	인도	5	6	3	3	3	5	4	29
16	볼리비아	5	2	1	5	3	5	6	27
17	남아공	3	4	1	5	3	7	3	26
18	파푸아뉴기니	4	4	1	2	3	4	5	23
19	러시아	2	4	3	3	1	3	6	22
20	카자흐스탄	3	2	3	3	1	4	3	19
21	잠비아	3	2	2	5	2	2	3	19
22	인도네시아	3	5	1	3	1	1	4	18
23	베네수엘라	2	1	1	4	1	1	4	14
24	콩고	1	2	1	3	1	1	4	13

자료원 : <http://www.dolbear.com>

II. 현지정부의 자원개발 규제현황

1. 정치적 규제

□ 투자유치 장려

-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호주는 국가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자원부문에 있어서는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았으므로 개발도상국에서 볼 수 있는 급작스러운 정책의 전환이나 국유화, 자산몰수 등의 사태가 일어날 확률은 지극히 낮음.
- BEHRE DOLBEAR사의 조사에서도 정치경제 시스템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호주의 투자지로서의 가치를 높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다만 우라늄 부문에 있어서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 정치적 규제가 있어왔으나 최근에 이에 변화가 있는바 아래에서 설명함.¹⁾

□ 하워드 총리, 우라늄 및 원전 정책 발표

- 존 하워드 총리는 지난 4월말 호주 정부의 우라늄 개발 및 원전 관련정책 방향을 제시함.
- 이는 지난 해 우라늄 및 원전검토 T/F의 최종보고서에 대한 정부의 검토결과를 밝힌 것으로 올해 선거에서 노동당과의 주요 정책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 주요 발표 내용

- 기후변화의 중요성에 비추어 세계최대 우라늄 보유국인 호주는 원자력 발전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우라늄을 개발할 책임이 있음.
- 전문가들은 호주가 우라늄 개발 및 수출에 대한 규제로 인해 경제적 기회를 잃고 있다고 지적

1) 자료원 : 호주산업자원관광부, 현지 언론, 주호대사관 등

- 주요 Action Plan은 1) 우라늄 광산 개발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장애요인 제거 2) 제4세대 원자로 개발 프로그램에의 확고한 참여로 요약됨.
- 이 Action Plan에 따른 작업은 2008년부터 집행될 전망이다.

□ 각계의 반응

- 야당인 노동당은 종래의 신규개발 금지를 완화, 우라늄 개발은 허용하되 원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수정된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여전히 개발 금지세력이 적지 않음.
- 노동당이 집권하는 주정부 역시 수정안에 대한 반대파와 찬성파로 나뉘어져 있음.
- 원자력 등 산업계가 반색을 표명한 가운데 호주자연보전재단(ACF), 사회주의동맹(Socialist Alliance) 등 단체는 재생에너지 기술과 에너지효율 향상을 추구하고 우라늄 개발을 금지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음.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우라늄 광산 신규개발은 주정부가 정책에 우호적인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노던테리토리를 중심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 원전 등 원자력 산업은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추진과 업계 등의 노력으로 논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 같은 방향은 올해 하반기 총선 결과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은 현재 호주에서 우라늄을 도입하고 있으나 향후 개발사업 참여방안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호주 정부가 추진할 제4세대 원전개발 참여, 원자력 규제체제 마련, 연구개발 및 기술훈련, 수용성 확보추진 등에 한·호 협력 가능성 증대

□ 호주의 우라늄 현황

- 매장량 세계 최대(전 세계 매장량의 24%)
- '06년 전 세계 우라늄 생산량의 20% 차지(2위)
- 우라늄 정광수출 외에 원자력 산업은 없으며 연구용 원자로만 설치 운영중임.

2. 법적 규제

가. 광산 채굴권 신청절차

- 호주의 광산 채굴에 대한 개발사업 인가 및 허가는 각 주(6개 :NSW, VIC, QLD, WA, SA, TAS) 및 NT(Northern Territory : 북 호주 행정자치구역)의 에너지자원부에서 각각 관할하고 있으나 내용과 적용에 있어 거의 동일함.
- 광물 탐사를 원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대부분 해당 주의 에너지자원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탐사 방법과 비용 등에 대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사전 인가(Licence)를 받아야 함. 또한 동 기업이나 단체는 정부 기관지 혹은 지역 일간지를 통해 광물 탐사 작업과 관련하여 공표(public notification)할 의무가 있음.
- 한편, 탐사 및 발굴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발굴 지역의 지표면 파손 및 변형에 대한 비용 등 보상비용을 해당 지대의 소유주에게 지불해야함. TAS주와 NT의 경우 일부 비용을 사전에 예탁시켜야 함. 또한 6개주와 NT 모두 탐사 발굴 신청 지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NSW주와 VIC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연간 임대료를 지불해야 함.

〈주(州)별 광물자원 탐사 인가 요건〉

APPLICATION FOR EXPLORATION LICENCES - SUMMARY OF STATE REQUIREMENTS					
STATE	PUBLIC NOTIFICATION	PUBLIC COMMENT PROVISION	CONSIDERED IN WARDEN'S COURT	CONSIDERED BY MINISTER	LEVIES
WA	■	■	■		■
NSW	■	Required to notify the owner of the land before entry			
SA	■	■		■	■
QLD	Only required where the perm it is being processed in accordance with the native title expedited procedures	Licencee to enter access arrangement with land owner			■
TAS	■	■	■		■
NT	■	■		■	■
VIC	■	■		■	

〈주(州)별 광물자원 탐사 보상비용 조건〉

EXPLORATION LICENSE - COMPENSATION CONDITIONS BY STATE		
STATE	COMPENSATION INCLUDES DEPRIVAL OF USE OF LAND, LOSS OF EARNINGS & SOCIAL DISRUPTION	SECURITY DEPOSITS OR PRIVATE PROPERTY BONDS
WA	■	
NSW	■	
SA	■	
QLD		■
TAS		■
NT		■
VIC	■	■

- 6개 주 모두 광물개발 유보 라이선스(Retention Licence)를 발급하고 있음. 이 라이선스는 광물을 발견한 기업 혹은 단체로 하여금 필요시 개발가치가 있을 때까지 발굴 혹은 채광(採鑛)을 유보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음.
- 유보 라이선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잠재적 가치가 있는 광물이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함. 유보 라이선스의 인가요건으로 공표의 의무가 있는 등 탐사 라이선스와 유사함.
- 호주 전 지역에서 채광 임대권(Mining Lease)을 신청할 수 있으며 탐사 라이선스 혹은 유보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우선권이 주어짐. 퀸즈랜드(QLD) 주의 경우 채광 임대권 신청자는 적절한 사전 보유권(pre-requisite tenure)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채광 개발계획에 대한 아웃라인과 세부계획안을 제출해야 함.
- 아울러 주 정부 기관지를 통해 광산 개발소식을 알리는 태스매니아(TAS)주를 제외한 호주의 전체 주에서는 광산 개발 신청 시 공표의 의무가 주어짐.
 - 호주 대부분 지역에서는 채광 작업이 인근 주거지역의 100~200미터(남호주의 경우 400미터) 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채광지역의 지주(地主)와 소유주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주 관할 총독(Governor-in-Council)이 임대 기간을 결정하는 퀸즈랜드 주 및 담당 에너지부 장관에게 결정 권한이 있는 태스매니아 주와 NT(Northern Territory)를 제외한 나머지 주의 경우 채광 임대는 최장 25년까지 가능하며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추가 요건들이 있음.
 - 채광 임대를 위한 첫해 비용은 서호주(WA) 주의 1,200호 불(100헥타르 기준, 신청료 포함)에서부터 퀸즈랜드 주의 4,340호 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으로 적용됨.

〈주(州)별 채광 임대권 신청 조건〉

APPLICATION FOR A MINING LEASE					
STATE	PUBLIC NOTIFICATION	PUBLIC HEARING OF OBJECTIONS	CONSENT BY OWNER/OCCUPIER OF PRIVATE LAND REQUIRED PRIOR TO MINING	ANNUAL RENT	REQUIRED TO LODGE PRODUCTION REPORTS
WA	■	■	■	■	■
NSW	■	■	■		■
SA	■		■	■	■
QLD	■	■	■	■	■
TAS		■	■	■	■
NT	■	■	■	■	■
VIC	■		■	■	■

나. 관련 정책 및 법규

- 호주 자원정책 관련 법규는 각 주의 개별 관할사안으로서 해당 주의 관련법규를 1차적으로 적용하나 호주 연방법과의 충돌 발생시 연방법이 우선 적용됨. 호주 채광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호주(WA : Western Australia) 주의 관련 법규들이 호주의 자원정책 관련 법규로서 좋은 예시가 되고 있는바, 하기의 4개 법이 적용되고 있음.

☐ Mining Act 1978 (채광법)

- 광물 탐사 단계부터 채굴에 이르기까지 라이선스 발급 등 WA의 역내 채광작업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을 관할하고 감독하는 법임.
- 채광업체가 본 법을 위반할시, WA의 주 정부는 라이선스를 취소하거나 박탈할 수 있음.
- 본 법과 관련하여 주 정부와 채광업체 사이에 분쟁이 발생 시 주 총독 관할 법정(Warden's Court)에 분쟁 조정이 위탁됨.

□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86 (환경보호법)

- WA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역내 채광작업이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으로 판단될 시 채광작업에 대한 승인을 거부할 수 있음.

□ Land Administration Act 1997 (토지관리법)

- Mining Act 1978에 의하면 1899년 이전 자유롭게 취득된 광물자원을 제외하고 WA 역내 모든 광산 및 광물자원은 호주 연방정부(혹은 호주의 현군 주인 영국여왕 : the Crown)에 귀속되어 있는바 채광작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채광 지역에 대한 임대권을 연방정부로부터 사전 승인받아야 함.
- 본 법은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 이양된 토지 관리권한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관리감독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Native Title Act(NTA) 1993 (원주민 토지 보호법)

- 1992년 호주 연방 최고법원인 HCA(Hight Court of Australia)의 결정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원주민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 및 보호할 목적으로 원주민 소유의 토지거래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채광 희망지역이 원주민 소유의 토지일 경우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됨. 이는 상거래 능력이 부족한 원주민들이 토지 거래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호주 연방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법규임.
- 한편 호주의 역외(offshore) 자원에 대한 연방정부의 관리감독을 규정하는 법으로서 하기 Offshore Minerals Act 1994가 있음.

□ Offshore Minerals Act 1994 (the OM Act, 역외광물자원 보호법)

- 본 보호법은 1994년 연방정부에 의해 제정된 법으로 호주의 연해 대륙붕에 매장된 석유자원을 제외한 기선(baseline) 3해리 이상의 영해(領海) 해저수역에 매장된 모든 광물자원과 관련하여 탐사, 발굴, 그리고 생산에 대한 전반적인 법규를 제공하고 있음.

- 본 법은 호주 연방정부와 각 주 정부들의 공조 아래 제정된 법으로서 지정위원회(Designated Authority)와 합동위원회(Joint Authority)에 의해 집행되고 있음.
- 지정위원회는 연방정부와 주 정부 인력으로 구성된 실무기구로서 본 법과 관련된 실무를 집행하는 반면 합동위원회는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광물 및 에너지산업 담당 장관들로 구성된 실질적인 의사결정 기구로서 본 법과 관련된 각종 중요 사안들을 의결함. 단, 의사결정 과정에서 연방정부와 주 정부 사이에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 장관에게 우선적인 결정권이 있음.
- 역외광물자원보호법(동법) 22조에 의하면 광물자원은 해안 기선 3해리 이상의 영해 해저수역에 매장된 각종 형태의 모래, 자갈, 점토, 석회암, 암석, 증발암(evaporites), 이판암(shale), 그리고 석탄 등 모든 종류의 해저 광물로 정의되어 있음. 석유(petroleum)의 경우 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Petroleum (Submerged Lands) Act 1967 (PSLA, 석유 및 침수지 보호법)에 의해 별도로 관리됨.
- 본 보호법의 주요 관할사항은 탐사, 유보(retention), 채광, 그리고 작업 라이선스 발행임. 본 법의 중요 사항(라이선스 비용 등)과 관련하여 각각 관련 규정(regulation)이 있는바 하기 표와 같음.

〈역외광물자원보호법 및 관련 규정〉

Australian Government Offshore Minerals Act	
THE TOTAL AUSTRALIAN GOVERNMENT LEGISLATIVE PACKAGE IS SET OUT IN THE FOLLOWING TABLE	
ACTS	REGULATIONS
Offshore Minerals Act 1994	Offshore Minerals (Ballot Procedures) Regulations No: 46 of 1994
	Offshore Minerals (Fees) Regulations No: 47 of 1994
	Offshore Minerals (Data Lodgement and Reporting) Regulations No: 85 of 1996
Offshore Minerals (Exploration License Fees) Act 1981	Offshore Minerals (Exploration License Fees) Regulations No: 49 of 1994
Offshore Minerals (Retention License Fees) Act 1994	Offshore Minerals (Retention License Fees) Regulations No: 50 of 1994
Offshore Minerals (Mining License Fees) Act 1981	Offshore Minerals (Mining License Fees) Regulations No: 51 of 1994
Offshore Minerals (Works License Fees) Act 1981	Offshore Minerals (Works License Fees) Regulations No: 52 of 1994
Offshore Minerals (Registration Fees) Act 1981	Offshore Minerals (Registration Fees) Regulations No: 48 of 1994
Offshore Minerals (Royalty) Act 1981	
To view above acts go to http://www.austlii.edu.au/au/leqis/cth/consol act/	

- 한편, 영해 3해리 이내의 해저수역에 매장된 광물자원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해당 주에 귀속되어 있는바 호주의 각 주(6개)와 NT(Northern Territory : 북호주 행정자치구역) 정부는 연방정부의 역외광물자원보호법(OM Act)을 표본으로 하여 각각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있음.
- 하기 표는 2004년 11월 기준, 주별 영해 3해리 이내 광물자원에 대한 입법 운용 현황임.

〈주별 담당 해수역 광물자원법 입법현황〉

STATE	ACTS
Queensland	Offshore Minerals Acts 1998 enacted.
New South Wales	Offshore Minerals Acts 1999 enacted.
Victoria	Not yet enacted.
Tasmania	Not yet enacted.
South Australia	Offshore Minerals Acts 2000 enacted.
Northern Territory	Not yet enacted.
Western Australia	Offshore Minerals Acts 2003 enacted.

다. 환경관련 규제

- 국가경제의 약 70%(GDP 대비 산업별 비중)가 관광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호주에서 환경보호는 국민의 생활과 안전은 물론 국가경제와 직결되는 중요 사안임.
- 호주 정부의 환경정책은 채광과 원전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에 대한 감정 (assessment)과 방지 그리고 훼손된 지역의 환경 재활 프로그램을 관할하고 있음. 각 주의 주정부들은 연방정부와의 공조 아래 호주 관광산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호주의 각 주(state) 및 행정자치구역(territory) 정부들은 역내는 물론이고 해안 기선(baseline)으로부터 3해리까지의 해수 역에 있어 광물자원 관리 및 환경보호에 대한 우선적인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음.

- 환경 파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호주 연방정부의 대표적인 법규로 하기 2개 법이 있음.

□ Environment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Act 1999 (the EPBC Act ;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존법)

- 지난 1999년 호주의 환경 보호 및 다양한 생물군을 보존하기 위해 연방정부에서 제정한 법
- 본 법을 통해 호주 연방정부는 국가 차원의 환경보존 가치(National Environmental Significance; NES)가 있는 사항들을 직접 관할하고 있음. NES로서 현재 연방정부에 의해 직접 관리되고 있는 중요 대상물에는 호주의 해양환경, 월드 헤리티지(World Heritage)로 등록된 국제 보존물, 국립 보존물, 람사르 조약(Ramsar Convention, 1971)에 규정된 호주 내 물새서식지 및 습지, 멸종 위기 생물군, 철새 서식지, 그리고 핵 활동 등이 있음.

□ Petroleum(Submerged Lands) Act 1967 (PSLA, 석유 및 침수지 보호법)

- 호주는 1천2백만 평방킬로미터 이상의 면적(호주 전체 국토면적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해수(海水)에 대한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음. 동 해수 역에는 석유와 천연가스는 물론 각종 광물자원들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본 법(PSLA)은 호주의 연방정부 산하 산업관광자원부(Department of Industry, Tourism, and Resources) 장관이 해안 기선으로부터 3해리 이상의 해수 역에서의 석유 및 광물자원 탐사개발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규정하고 있음.
- 한편 호주의 해양환경은 NES에 의해 직접 관리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본 법은 연방정부의 EPBC(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존법)에 준해서 적용됨.
- 본 법은 호주의 해저 유전을 탐사하거나 개발하는 업체들이 해저 및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음.

3. 세제상 규제

- 호주에는 현재 자원산업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통일된 세제는 없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일반 세제 법규(Government taxation legislation) 및 각 주별 광산업 관련 세제(State mining taxation)를 혼합 운용하여 광물 및 에너지산업을 규제하고 있음.
- 호주의 광산업 및 석유산업 관련 법인세는 일반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30%의 법인세율(corporate rate)이 일괄 적용되고 있음. 고용주에게는 일반 업체와 마찬가지로 지급 급여세(Payroll tax, 4.75%-6.85%),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CGT, 변동세율 적용), 그리고 부가 급부세(Fringe Benefits Tax: FBT, 약 48.5%)가 부과됨.
- 아울러 호주 내 수입되는 전체 상품에 대하여 10%의 부가세(Goods & Services Tax : GST)가 일괄적으로 징수됨.(참고 : 호주 국세청 www.ato.gov.au)
- 채광지역, 유전(油田), 그리고 광물 수송 장비의 개발 및 운용에 대한 비용은 세금 공제가 가능함. 또한 채광지역의 환경 보호를 위한 제반활동(Environmental Protection Activities: EPA) 비용도 공제 대상임.
- 호주는 거주국가와 수출국가의 국제적인 이중 과세(double taxation)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뉴질랜드, 멕시코,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 다수의 국가들과 이중 과세 방지 협약을 맺고 있음.
 - 호주 정부는 또한 이중 과세 방지 협약을 바탕으로 하여 타 국가 거주 사업자들이 호주 내 취득한 배당 이익(약 15%의 상한선), 이자(약 10%의 상한선), 그리고 지분 로열티(약 10%)에 대해 과세 상한선을 규정하여 지나친 과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음.
 - 한편, 호주 정부는 광산업 및 에너지자원 개발과 관련된 연료 사용(Off-road component of energy grants)에 대한 세제 혜택(Fuel Excise Credits)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세제 개혁을 추진 중임.(2006년 7월 개시 예정) 이의 결과로 향후 동 산업 개발에 사용되는 연료의 경우 일반 연료 소비세 기준 50%의 할인율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광물자원 발굴 및 생산을 위한 로열티(royalty)는 주 정부에 의해 징수되고 있으며, 2000년-2001년 기준 호주의 총 광산물 생산이익금의 약 3.5%에 해당하는 로열티가 징수되었음.(호주 총 GDP의 5.3%)
- 호주의 각 주 정부 및 NT에 지불되고 있는 로열티의 과세비율은 하기 표와 같음.(주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다름) 판매이익은 프로젝트 기반이며 운용비용, 운용자산 감가상각비용, 재고비용, 임대 이자, 탐사비용 등의 프로젝트 비용을 공제한 후 산출됨.

〈해당 자원별 로열티 과세율〉

구분	로열티 과세율
광물자원(석탄 제외)	판매가격의 1.5~7.5% 혹은 판매이익의 20%
석탄	판매가격의 2.5~7.5% 혹은 판매이익의 18%
산업용광물(Industrial Minerals)	판매 ton당 10cent~1A\$

- 해안 기선 3해리 이내 수역에 매장된 광물자원에 대한 로열티는 해당 주 정부가 단독으로 관리하는 반면, 3해리 이상의 역외 광물자원 탐사 및 개발 관련 로열티는 Offshore Minerals Act 1994 (역외광물자원 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바 통상 석유자원을 제외한 역외 광물자원에 대한 로열티는 해당 주 정부가 60%, 그리고 연방정부가 40%를 수취함.
- 현재 역외 광물자원 탐사 및 개발에 대한 통일된 로열티 시스템이 없으며 단지 Offshore Minerals (Royalty) Act 1981 (역외 광물자원 로열티 관련법)을 기초로 연방정부 담당 장관 및 주 정부 담당 장관들로 구성된 합동운영 위원회(Joint Authority)를 설치하여 석유자원을 제외한 모든 광물자원들에 대한 로열티의 유형과 과세율을 결정하고 있음.
- 3해리 이내 주 정부 단독 관할 수역의 광물자원에 대한 로열티는 해당 주 정부에 의해 적절하게 입법이 될 때까지는 역내(Onshore) 광물자원 로열티 시스템에 준하여 로열티의 유형과 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4. 기술규제 : 특기사항 없음.

5. 기타

- 다민족이 거주하는 선진국으로서 포괄적 의미의 사회 및 문화적 규제가 두드러지지 않는 점. 특히 광업부문은 대규모의 자본이 수반되는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가 일반적인바 이러한 측면에서의 장애는 없다고 사료됨.
- 다만 행정절차의 처리 속도, 정보의 공유 등에서 한국과의 차이가 있음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이는 특별히 외국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이라고 보기에 어려움.

III. 현지 진출 시 유의 사항

- 호주의 광업부문 신규투자는 2005~2006년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는 광업부문 투자 결정에는 타당성 조사 등 오랜 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1990년대 초반을 전후하여 본격적 탐사활동 등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의미함.
- 한국은 90년대 중반이후 호주에 대한 광업투자에 주목하기 시작하였으나 곧 이어 맞은 외환위기로 인해 상당기간 동 부문에 공백기가 발생하였음.
 - 이에 비해 미국, 유럽, 일본 등은 80년대 이전부터 본격적인 투자를 진행시켜 왔으며 이를 통해 생긴 노하우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또한 최근에는 중국 국영기업들의 투자 수요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따라서 현재 종합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중소 규모의 광업 투자 프로젝트 투자 기회가 대부분이라고 판단됨.
 - 이에 반해 국내기업은 대부분 광업투자 결정을 위한 노하우 및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임.
 - 이러한 이유로 호주 자원부문에 대한 투자는 지극히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위험분산을 위한 국내기업 간, 국내기업-정부기관 간, 국내기업-해외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에 의한 투자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미안마

- I. 외국인 자원개발 현황
- II. 현지 정부의 자원개발 규제현황
- III. 현지 진출 시 유의 사항

I. 외국인 자원개발 현황

□ 에너지 자원 개발 현황

- 미얀마의 자원 개발은 해상에서의 천연가스 개발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미얀마의 천연가스는 Yadana 천연가스전, Yetagon 천연가스전 개발로 2001년부터 미얀마 최대수출품목으로 등장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외화획득원이 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개발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대우인터내셔널이 미얀마 북서부 라카인 스테이트 앞바다에서 2003년 매장량 4조 내지 6조 입방피트에 이르는 대규모 천연가스전(A-1광구) 발굴에 성공했으며, A-3, A-7 광구에 대한 탐사 및 개발도 진행 중임.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 동향〉

회계연도	원유(천 배럴)	천연가스(백만 입방피트)
2003~04	7,165	349,846
2004~05	7,484	377,584
2005~06	7,962	404,357
2006~07	5,157	306,986

* 주 : 회계연도 기준(4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2006-07년의 경우 2006년 11월까지임.

* 자료원 : 미얀마 중앙통계청, Selected Monthly Economic Indicators

II. 현지정부의 자원개발 규제현황

1. 정치적 규제

- 미얀마는 농업이 기간산업으로 국가 경제개발 정책 또한 농업의 발전에 최우선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에는 전 분야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미얀마 정부의 경제 개발 4대 목표중 하나는 국내외로부터의 기술 노하우와 투자 유치를 통한 발전이며, 외국인 투자법(Myanmar Foreign Investment Law)의 기본 원칙중 하나는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는 천연자원의 개발임.
- 미얀마 정부는 국영기업법(State-owned Economic Enterprise Law, 1989년 제정)에 의거해 국영기업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12개 분야에 대해 민간분야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석유·천연가스의 채굴·판매, 금속의 채굴 및 정련, 판매 등도 제한 분야 속함.
 - 그러나 12개 제한분야라 하더라도 미얀마 정부와 합작을 통한 투자는 가능하며, 석유·천연가스의 경우 미얀마 석유가스공사(Myanmar Oil and Gas Enterprise), 광물의 경우 미얀마 광업부(Ministry of Mines) 산하 3개 광업공사(Mining Enterprises)와 합작을 통한 투자가 가능함.
- 외국인 투자법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에 대해 투자기간(계약에 명시된)동안 국유화로부터 투자자산의 보호를 보장하고 있으며, 투자기간 만료 시 투자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하고 있음.

〈외국인 투자법의 투자 보장〉

CHAPTER XI

Guarantees

22. The Government guarantees that an economic enterprise formed under a permit shall not be nationalized during the term of the contract or during an extended term, if so extended.
23. On the expiry of the term of the contract, the Government guarantees an investor of foreign capital, the rights he is entitled to, in the foreign currency in which such investment was made.

자료원 : Myanmar Foreign Investment Law

2. 법적 규제

가. 관련 법령 개요

- 외국인 광업투자 관련법은 광업법(1994), 외국인투자법(1988), 외국인투자시행세칙(1993) 등이며, 미얀마 외국인투자법고시 89-1호에는 국가이익이 수반되는 경우 외국인의 광물자원에 대한 개발투자를 허용.
- 미얀마의 외국인투자법은 광산개발 투자 시 기본적인 제한규정만 명시한 상태로써 광산개발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없으며, 투자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대부분의 사항을 결정토록 하고 있음.

□ 광업법(Myanmar Mines Law 1994)

- 1994년 9월 6일 공포된 광업법에 따르면 광물자원은 금속광물, 산업광물, 석재로 분류되며 목적은 아래와 같음.
 - 미얀마 정부 광물자원 정책의 구현
 - 국내 수요 충족 및 생산증진을 통한 해외 수출 확대

- 광물자원에 대한 국내 및 외국인 투자유치
 - 광물자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개인 혹은 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승인
 - 광물자원의 개발, 보존, 이용 및 연구
 - 광물자원의 개발에 따른 유해 영향으로부터 자연환경을 보호
- 미얀마 광업법에 명시된 로열티는 생산기준으로 광물 판매 금액에 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납부해야함.
- 금, 은, 백금 및 기타 귀금속 : 4~5%
 - 철, 아연, 구리, 납, 주석, 텅스텐, 니켈, 안티몬, 망간 등 금속 광물 : 3~4%
 - 산업광물 및 석재 : 1~2%

□ 광업규정(Myanmar Mines Rules 1996)

- 광물 시굴 허가
- 금속광물은 광업부(Ministry of Mines), 산업광물 및 석재는 광업국(Department of Mines)으로 허가를 신청해야 함
 - 외국인 투자의 경우 모든 광물에 대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허가기간은 1년이며, 1년 연장 가능
 - 허가면적은 4,200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음
- 광물 탐사 허가
- 금속광물은 광업부(Ministry of Mines), 산업광물 및 석재는 광업국(Department of Mines)으로 허가를 신청해야 함
 - 외국인 투자의 경우 모든 광물에 대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독점적인 탐사권한이 부여됨
 - 허가기간은 기본 3년, 2년 연장이며 필요시 추가 연장 가능

- 인접지역에 대한 탐사지역 확대 가능
 - 허가면적은 최대 3,150평방미터임
- 대규모 광물 생산 허가
- 모든 광물자원에 대하여 광업부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환경보호계획을 제출해야 함
 - 외국인 투자의 경우 모든 광물에 대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국인 경우에도 투자금액이 10백만 Kyats(짜트²⁾) 이상일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함
 - 외국인 투자의 최소금액은 US\$ 500,000임
 - 허가기간은 2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년 단위로 연장
 - 독점권이 부여되며, 인접지역에 대해 확대 가능
- 소규모 광물 생산 허가
- 금속광물은 광업부(Ministry of Mines), 산업광물 및 석재는 광업국(Department of Mines)으로 허가를 신청해야 함
 - 투자금액이 10백만 Kyats 미만으로 금속광물일 경우 50acres, 산업광물 및 석재의 경우 247 에이커를 초과할 수 없음
 - 허가기간은 5년이며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함
- 광물 시굴, 탐사, 생산 중 1가지 이상의 통합 허가 또한 광업부에 신청해야 하며 조건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함.

2) 짜트는 미얀마 현지화로, 정부공식환율(US\$1=6짜트), 공인환전환율(US\$1=400짜트), 시장 환율(US\$1=1,290짜트) 등 3가지 환율이 존재함. 시장 환율은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환율로서 변동환율이며, 나머지는 고정 환율임

3. 세제상 규제

- 석유·가스 및 광물 개발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으로는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소득의 30%)와 광업법에 규정된 로열티가 있음.
- 미얀마 광업법에 명시된 로열티는 생산기준으로 광물 판매 금액에 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납부해야함.
 - 금, 은, 백금 및 기타 귀금속 : 4~5%
 - 철, 아연, 구리, 납, 주석, 텅스텐, 니켈, 안티몬, 망간 등 금속 광물 : 3~4%
 - 산업광물 및 석재 : 1~2%
- 석유·가스 개발의 경우 로열티는 10%이며, 계약보너스와 생산보너스를 추가로 납부해야 함. 계약보너스는 투자자와 미얀마 정부간 개발 계약 시 납부하며, 생산보너스는 향후 석유·가스 생산량에 따라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함.
 - 계약 보너스와 생산보너스의 구체적인 금액은 협상에 따라 결정됨.

4. 기술 규제

- 미얀마 광업법 및 광업규정에는 광업 투자에 대한 기술규제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환경조항은 계약에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환경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체계나 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미얀마는 아직 환경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나, 대규모 광산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투자 타당성 조사에 환경 영향 평가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외국인 투자자는 광산 투자 시 World Bank(이하 WB)의 환경표준 혹은 투자자의 자국의 환경 표준을 따라야 하며, 투자자 자국의 환경 표준이 WB의 표준보다 낮을 경우 WB의 표준을 따라야 함.

5. 기타

- 미얀마의 천연자원에 대한 개발 투자는 미얀마 정부와 생산물 분배 혹은 이득 분배 계약을 통해 가능함.
- 미얀마 정부는 고질적인 외환부족으로 인해 독자적인 투자보다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자원개발을 선호
- 미얀마는 자원 개발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사회·문화적은 규제는 없으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중가격 제를 적용하는 등 차별을 두고 있음.
- 외국인에 대해서는 전기, 수도, 통신사용에 따른 공과금과 기타 시설 사용시(국내항공료, 골프장 등) 내국인과는 달리 달러화를 징수함으로써 최소 5배에서 최대70배에 이르는 차별적 요금을 부과하고 있음.

III. 현지 진출 시 유의 사항

- 미얀마는 석유·가스에 나 규정이 없으며, 광물 개발에 대해 광업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기본적인 제한사항만 명시되어 있고 투자자와 미얀마 정부 당사자간의 계약과 합의를 통해 대부분의 사항을 결정토록 하고 있음.
-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미얀마 광업부, 미얀마 에너지부 등과 협의를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무역정책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므로 투자 승인을 받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소요됨.
- 미얀마의 고질적인 전력난, 열악한 교통, 통신 인프라 등은 미얀마에 대한 자원개발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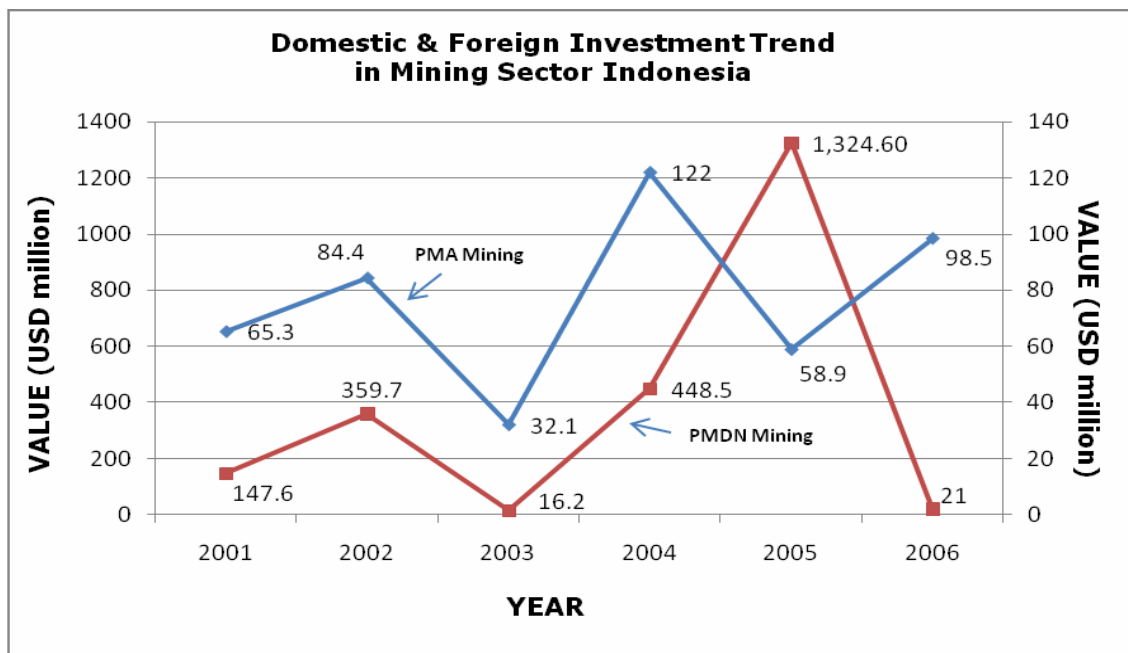
- I. 외국인 자원개발 현황
- II. 현지 정부의 자원개발 규제현황
- III. 현지 진출 시 유의 사항

I. 외국인 자원개발 현황

○ 현지국의 외국인 자원개발 투자 및 생산현황 소개

- 인도네시아의 자원개발은 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오랫동안 재정부족과 인도네시아 정부의 관심부족으로 석유를 포함한 각종 에너지 자원개발이 지연되어 왔음.
- 그 결과,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기존 시추시설의 노후와 새로운 유정개발의 결핍 등으로 석유수출국기구인 OPEC회원이면서도 석유 순수입국으로 전락하는 상황까지 추락하였음.
- 이런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대체에너지로서 가스, 석탄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국제 광물가격이 상승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도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더라도 적극적으로 에너지자원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중임.

〈인도네시아 국내외 광산 투자 동향〉



II. 현지정부의 자원개발 규제현황

1. 정치적 규제

- COW계약 체결 중단으로 인한 실질적인 외국인 투자제한
 -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광업권을 취득할 수 있는 통로인 인도네시아 정부(에너지광업부장관)와의 COW 체결이 전면 중단됨으로써 직접적인 투자진출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임.
 - 결국, 기존의 광업권 보유자들과 금융지원, 기술지원, 용역계약 등을 맺고 광물을 전달받는 형태의 간접적인 투자진출만이 활용 가능한 상황임.
- 지방분권에 따른 자원개발권 분할 (Law No. 22/1999)
 - 지방분권이 진행되면서, 광산의 규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개발허가권을 나누어 가지게 되는데, 신 광업법 체제하에서 는 지방정부의 통제권 한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이 경우, 지방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규제가 생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추가적인 네트워크 구축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될 것임.

2. 법적 규제

- 기본법으로서의 광업법 (Law No. 11/1967)
 - 1967년에 제정된 광산 활동에 대한 주요규정으로 이미 낡은 규정이 많아 2007년 내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법률임.
 - 법률상의 불명성이 많고, 특히 자원개발회사에 대한 환경적 책임에 불명확한 요소가 많다고 함.

○ 숙지해야 할 법령들

- 상기 광업법 이외에도 2001년 대통령시행령 No.75, 2004년 에너지 광업자원부 시행규칙 No.1614, 2005년 해외투자관련 대통령령 등이 주요 관련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음.

○ 산림 보호지역에서의 개발활동의 제한

- 1999년 '산림보호지역에 대한 개발활동 제한법'이 발효되기 전에 성립된 계약을 제외하고는 산림보호지역에서의 모든 채굴권에 대한 허가가 금지되었음.

○ 자본투자법 정비로 COW 규정

- 자본투자(Capital Investment)에 대해 새로운 투자법률(Law No. 25/2007)도 2007년 4월 26일부로 발효가 되었는데, 에너지 부분의 투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함.

3. 세제상 규제

○ 조세 등 세금부과

- 인도네시아의 광산분야 세율은 30%선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별한 통제를 하지 않는 상황임.
- 다만, 바이오에너지원으로 각광받는 CPO가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임시 수출세를 부과하는 등의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기도 함.

4. 기술규제

○ 자격, 인허가 등

- 인도네시아 탄광 분야 진출 시 특별한 자격요건은 부과하지 않으나, 인허가는 현행법규 하에서는 중앙정부와의 COW를 받도록 되어 있는 상황임.
- 그러나 앞으로 신 광산법이 제정되면,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는 니켈, 구리, 알루미늄, 철광석, 저 열량 석탄 등 5개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여 광업권에 대한 사항을 취급시킴으로써 인허가에 관련된 외국인투자자의 고충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함.

5. 기타

○ 자원민족주의 대두

- 인도네시아 자원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먼저 사용해야 한다는 것과 자원개발을 외국기업에 넘기는 것을 반대하고 안보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자원민족주의가 힘을 얻고 있음.

○ 광물그룹별 규제 내용

- 그룹 A : 주요 광물
 - 수행기관 : 개발은 정부로부터 지정된 회사나 주정부의 회사에 의해 시행된다.
 - 허가 : 에너지 자원부 장관에 의해 주어진다.
- 그룹 B : 필수 광물
 - 수행기관 : 중앙정부 기업이나 지역 행정 관청에 의해 시행된다. 정부가 제시한 요건을 갖춘 개인기업, 중앙정부나 지역 행정관청들이 합작 투자한 기업, 정부 또는 주정부 와 개인 기업들이 합작 투자한 기업
 - 허가 : 에너지 자원부 장관에 의해 주어진다.

- 그룹 C : 그 외의 광물
 - 수행기관 : 주, 지역 정부, 국내 개인 기업, 협동조합, 개인
 - 허가 : 도지사에게 의해 허가
- 정부나 의회 승인이 권장되는 계약
 - 주요광물이나, 외국 자본 회사의 계약인 경우에, 정부 기관 또는 지방 정부의 기업사이의 계약에서 Contract of Work는 정부나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 개발권의 소멸
 - 개발에 대한 허가권은 기간의 만료로 만료되거나,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시작되지 않는 것은 취소되며, 개발 사업에 대한 대금 지불 전에 사업이 시작되면 개발권은 박탈당함.

III. 현지 진출 시 유의 사항

- 우리기업이 현지 자원개발 진출 시 유의점 등
 - 최근 인도네시아 몇 년간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우리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자원개발 투자에 큰 관심을 보였음.
 - 그러나 인도네시아 광산투자는 가짜 정보가 많고 위험부담이 높으므로 단기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특히 한인 브로커들 중에 인도네시아 주요인사와의 인맥을 강조 하면서 사기를 치는 경우도 비일비재함.
 - 따라서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가 보장하는 광업권인 COW는 더 이상 체결이 안 되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기존의 허가업체 중에서 적절한 파트너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 또한 최근 자카르타 무역관에 개설된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전반적인 투자환경과 관련법률 등에 대해 자문을 받고, 파트너 선정에 신중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울러 에너지자원 투자의 흐름을 잘 분석해 개발이 완료된 전통적인 자원보다 향후 각광을 받게 될 석탄액화사업(CTL : Coal to Liquid), 석탄층 메탄가스(CBM : Coal Bed Methane), 바이오 에너지 등에 대해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 보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러 시 아

- I. 외국인 자원개발 현황
- II. 현지 정부의 자원개발 규제현황
- III. 현지 진출 시 유의 사항

I. 외국인 자원개발 현황

1. 현지국의 외국인 자원개발 투자 및 생산현황 소개

- 러시아의 자원 개발 부문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음. 그러나 투자 통계상으로는 2005년에 전년대비 39%가 감소하는 경우 등 증감 폭이 큰 특징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2006년도에는 52%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다시금 2004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2007년 1/4분기에는 18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음.

〈자원 개발 부문의 외국인 투자 현황〉

(단위 : 백만 USD)

	2004	2005	2006	2007(1~3)
전체	40,509	53,651	55,109	24,624
자원 개발 부문 외국인 투자 금액	9,934	6,003	9,152	8,436
전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자원 개발 부문의 비중(%)	24.5	11.2	16.6	34.3
전년 대비 증가율(%)	N/A	-39.6	52.5	187.4

자료원 : 러시아 통계청

- 러시아의 자원 개발 부문에 가장 높은 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는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 등이다. 이중 네덜란드는 2006년도 전체 자원 개발에 대한 전체 외국인 투자액의 40%에 육박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006년 자원 개발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주요 국가별 통계〉

(단위 : 백만 USD)

	2006	비중(%)	투자 유형별 투자액		
			FDI	Portfolio	기타
자원 개발에 대한 외국인 투자 금액	9,152	100	4,521	2	4,629
주요 투자국					
네덜란드	3,642	39.8	3,480	-	162
프랑스	1,697	18.5	124	-	1,573
일본	521	5.7	2	-	519

자료원 : 러시아 통계청

- 외국 진출 기업들은 BP, Royal Dutch Shell, Exxon Mobil, Mitsui, Sodeco, Conoco Philips, Total 등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이 주축이 되고 있는데, 석유 가스 등 에너지 부문뿐만 아니라, 철광석, 비철금속, 유색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며, 90년대 중반 이후로는 석유·가스 부문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아지고 있음.

〈주요 다국적 기업의 석유·가스 부문 투자 진출 현황〉

투자 진출 기업	투자 현황
BP	· 2003년 61억5천만 불을 투자하여 러시아 튜멘의 석유회사와 TNK-BP 합작회사 설립 · 약 2조 입방미터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이르쿠츠크 코빅타 가스전 개발권을 소유회사(Russia Petroleum)의 지분을 62.7% 매입하였음. · 코빅타-사얀스크-이루쿠츠크를 잇는 645km 길이의 가스관 공사 시공사인 West Siberian Gas Company의 주식 50% 매입 · 사할린-4 프로젝트의 Western-Schmidt 지역 49%의 배당권 소유 · 사할린-5 프로젝트의 Western-Schmidt 지역 49%의 배당권 소유
Exxon Mobil/ONGC (인도) / ODECO(일본)	· 사할린-1 프로젝트에서 1995년 체결된 생산물분배협정(PSA)에 따라 주관사로서 투자하였으며, 전체 프로젝트에 따른 할당 비율은 Exxon Mobil(30%), ONGC(20%), SODECO(20%), Rosneft(20%) 등임. 총 생산량은 원유 3억 톤, 천연가스 4850억 입방미터임.
/Royal Dutch Shell/Mitsui/Mitsubishi	· 사할린-2 프로젝트는 'Sakhalin Energy'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생산물분배협정(PSA)에 따라 Royal Dutch Shell(55%), Mitsui(25%), Mitsubishi(20%) 등이 할당을 받은 상태임.
Chevron	· 금년 1월 Chevron과 Gasprom neft (국영 Gasprom의 자회사)는 'Severnaya Taiga Neftegaz'사를 세웠음. 회사 주식 비율은 각 70%, 30% 수준이며, Gasprom neft사에서 주식 보유 비율을 높일 예정임.
West Siberian Resources	· 볼가 강, 우랄산맥, Timano-Pechora 유전 지대, 톱스크 등 지역에서 하루 20,000배럴의 석유를 시추하고 있는 스웨덴에 등록된 회사로서, 2006년 2월 기준으로 Altek(18%), 미국 사업가인 Stan Fields(8%), 투자 펀드(25%) 등에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Repsol YPF (스페인, 아르헨티나)	· 중남미 최대의 정유회사로서 2006년 2월 West Siberian Resources사의 지분을 10% 매입하였음.
Total Fina Elf (프랑스, 벨기에) / Norsk Hydro(노르웨이)	· 최근 언론에 Total Fina Elf사와 Rosneft사의 Joint Venture 설립에 관한 언급이 있었으며, 동 시베리아에 위치한 Rosneft사 보유한 유전 지역에 진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Total Fina Elf사는 Nenets 지역의 Haryaga 유전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으며, 지분의 50%를 보유하고 있음. 아울러 Norsk Hydro사에서도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 동 지역의 원유 매장량은 9700만 톤 규모로 알려졌다.

〈주요 다국적 기업의 광물 부분 투자 진출 현황〉

투자 진출 기업	투자 현황
China Petroleum and Oil Corporation (Sinopec)	· 러시아에 자회사인 'Lunsin'사를 설립하여 2006년 4월 투바 공화국에 위치한 Kyzyl-Tashtyg 탄전에 대하여 입찰하여 운영권을 획득함. · 대략적인 매장량은 poly metallic(1294만 톤), 구리(207만 톤), 황(625만 톤) 등임.
Rio Tinto (호주/영국)	· 2004년 러시아의 Peter Hambro mining사 JV를 설립하여 Tchagoyan 금광의 개발권을 얻었으며, 2006년 1월 Norilsky Nickel사와 극동 지역, 동 시베리아 등지에서 귀금속, 비철금속, 철광석 등을 채굴하고 있음.
Barric Gold (캐나다)	· 러시아 Highland 금광과 JV를 설립하여 Chita 지역의 금광 개발에 착수하였음.

II. 현지정부의 자원개발 규제현황

1. 정치적 규제

- 러시아 정부는 자원개발에 대한 외국인 투자 및 민간 자본의 투자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리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석유·가스 등 에너지 자원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최근 석유·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국내 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2006년 기준 16%), 더욱 정부 통제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2006년 11월에 발표된 IMF 보고서에도 러시아 정부의 자원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금년 6월 27일에 현지 언론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 정부가 에너지 부문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시도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의 투자 진출에 대해 높은 진입 장벽을 구축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 러시아 정부의 정치적 규제로서 가장 유명한 사건은 2003년 10월에 발생한 유코스 사태임. 당시 러시아 정부는 반 푸틴 성향을 보인 호도롭스키 유코스 사장을 사기 및 세금포탈 혐의로 구속하였고, 유코스는 부도 처리되어 국영 석유 회사인 Rosneft에 의해서 헐값에 인수되었음.
- 또한 TNK-BP의 코빅타 프로젝트의 매각과 사할린-2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문제 역시 정치적인 원인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있음.
- NK-BP의 코빅타 프로젝트의 경우 Gasprom의 지분 매입과 관련된 협상을 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 이미 Gasprom에서 정부 관계자들과 TNK-BP에 대한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기위한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후 러시아 자원관리부에서는 TNK-BP의 코빅타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에서 자원 개발 재 승인에 대한 법적인 위반이 있었다는 것과 당초 개발 목표에 따른 생산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음. 러시아의 유력 민간 연구 기관인 러시아 에너지 정책 연구소에서는 Gasprom의 TNK-BP로부터의 지분 매입을 강제 시행 결정은 '행정적 갈취'와 같은 행동이라고 비난하였음.

- 사할린-2 프로젝트의 경우 Shell사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었으나, 2005년 러시아 환경 자원 감독국에서 사할린 지역의 생태계에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지적함에 따라 시작되었음. 또한 러시아 자원관리부에서 생산물 분배 협정(PSA)을 취소하도록 제소하였으며, 러시아 산업에너지부에서는 동 프로젝트의 예산 증액 신청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였음.

2. 법적 규제

- 자원 개발 부문의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러시아 연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들임.
 - The federal law on foreign investment into the Russian Federation 제 160조(1999. 7.9.)
 - The federal law on the product sharing agreements 제 225조(1995. 12.30)
 - The federal law of suboil 2395-1조(1992. 2. 21)
- 위의 해당 법률에 따라서, 각종 시행령이 있으며, 자원 개발 관련 건물, 부동산 등의 소유 및 임대에 대한 규정, 생산물 분배 협정(PSA)에 대한 세부 규정, 자원 개발의 권리 등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음.
- 러시아 자원 개발 부문에서 가장 큰 법령적 장애는 복잡한 러시아 각종 법령과 이러한 법령을 이해에 어려움이 되는 언어적인 장벽임. 외국 기업들이 자원 개발 분야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 유력 법률 사무소를 통해서 시장에 접근해야 함.
- 아울러, 러시아 정부는 원자력, 무기, 중요 자원, 신소재 등 전략적 중요 부문에 대해서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9개 경제 부문의 40개 사업 영역에 대해서 지정하였음.
- 이러한 분야에 속한 기업의 지분을 50%이상 외국인이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함. 또한, 외국 정부, 기관 등에서 주요 자

원이 매장된 지역의 개발권을 가진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25%로 제한되어있음.

- 이러한 전략적 중요 자원 매장 지역은 10개의 유전 지대, 26개의 천연가스 지대, 5개의 구리 광산, 대륙붕 지대, 이루크츠크의 '수호이 로그' 지대 등임.

3. 세제상 규제

- 세제상의 규제로서 대표적인 것은 광물 추출 세이며, 러시아 정부에 의해서 광물을 개발하는 주체에 대해 부과됨. 이때 부과의 대상은 다음의 조건에 해당 되는 경우임.
 - 러시아연방의 국토 또는 해당 세금 납부자의 처분권이 인정되는 지역에서 자원이 추출되는 경우
 - 자원 개발 산업에서 생성되는 부산물에서 추출되는 것이 개별 산업으로 인정된 경우
- 총 과세 금액은 총 개발된 자원의 양과 단위 자원에 대한 과세금액에 근거하여 정해지게 됨.(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유전지역에서 발굴된 원유 및 압축가스의 경우 발견된 총량이 기준이 됨)
- 과세 대상 기간은 매 1개월이며, 일부 자원의 경우 세금이 면제되는데, 이 경우 조세 코드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며, 일례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음.
 - 개발 과정에서 손실되는 분량에 해당하는 자원의 분량
 - 자원 개발 시 동반적으로 발견되는 가스
 - 광물을 포함한 지하수
 - 러시아 정부에서 정한 저 품질 광물의 개발
 - 러시아에서 추출 기술이 없는 광물의 부산물

- 직접적 판매가 이루어 지지 않으며, 의학적 용도, 재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수자원
- 농업용 지하수
- 상기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해당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 되는데, 최종 납입 세금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불해야하며, 선납한 세금이 최종 세금보다 많은 경우, 해당 월의 차월의 마지막일 이전에 세금 환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4. 기술규제

- 석유·가스의 개발 승인 제도는 토지법(1992년 2월 21일)에 의해서 실시되었으며, 1995년 생산물 분배 협정(PSA), 1995년 대륙붕법 등에 의해서 보완되어 왔음.
- 현재는 러시아 지하자원부 산하의 러시아 연방 토지청에서 허가 발급권을 보유하고 있음.
- 2000년 토지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토지 사용권은 5년간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며, 생산 허가 기간은 20년으로 제한되어 있었음. 이후 법령 개정으로 생산 허가 기간이 해당 지역의 자원이 생산되는 기간으로 변경되어 이론적으로 생산 허가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으나, 실질적으로는 20년간 생산 허가 기간으로 인정되고 있음.
- 토지 사용권 및 관련 허가증은 국가 조달 또는 경매의 방식을 통해서 결정되는데, 러시아 연방 토지청(본청 또는 지방청)에서 주최하는 조달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며, 해당 지방 정부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진행됨.
- 조달을 통한 선정은 기술적 요소, 재정적 요소, 환경적 요소 등 입찰에 필요한 주요 요소를 고려하여 가장 경쟁력이 있는 제안서를 제출한 기업을 선정하게 되며, 경매를 통한 선정은 개발권에 대해서 가장 높은 일괄 비용을 제시한 기업을 선정하게 됨.

- 자원 개발에 선정된 기업은 추가적으로 관련 기관에 개발 계획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할당 채굴량을 받아야 함.

5. 기타

- 2004년 3월 내각 개편 과정에서 정부 기구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 작업이 있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기존에 러시아 연방 지하자원부의 단일 감독 체제에서 러시아 연방 토지청과 러시아 연방 환경 감독국의 2원화된 감독체제가 되었으며, 환경과 산업안전 관련된 문제를 감독하는 러시아 연방 생태·기술·핵 관리청의 간접적인 통제를 받게 되어 있음.
- 또한 생산물 분배 협정(PSA)의 경우에도 기존 생산물 협정 관리 위원회가 폐지되고 러시아 산업에너지부에서 감독하는 체제로 변경되었음.
- 한편, 에너지 자원의 개발에 대한 내국인의 외국기업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반감 등은 특별히 없는 상황임.

III. 현지 진출 시 유의 사항

- 아직까지 러시아의 자원 시장에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많으며, LG 상사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우리 기업의 진출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현지 기업과의 Joint Venture 설립을 통하여 지하자원개발권을 획득하는 것이며, 이미 지하자원 개발권을 획득하였고, 러시아 정부 관계자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지분을 매입하는 것임.
- 중국계 기업인 Sinopec의 경우에도 러시아 현지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2006년도에 약 2억불을 투자하여 현지 금속 광산의 개발권을 획득하였음.
- 러시아 유력 투자 금융 회사인 Metropol사에서는 아연, 납, 베릴륨 등 주요 광물의 개발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의 투자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석유·가스 등 주요 자원의 경우 외국 기업에 대하여 문호를 더욱 닫고 있는 상황이므로, 양국 정부 간 협상을 통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성격이 강한 상황임.

자료원 : 러시아 경제 통상 개발부, 주요 현지 언론 보도, 러시아 연방 통계 위원회, 기타 무역관 보유자료 등

2007년 KOTRA 발간자료목록

● Global Business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7-001	세계 바이오에너지 개발동향	2007.2
07-002	일본 히트 상품 속에 숨은 키워드	2007.2
07-003	2010, 중국 비즈니스 이정표 : 3가지 의문과 제안	2007.2
07-004	2007년 중국의 외자기업 관련 주요 신규법규와 시사점	2007.2
07-005	대미수출 부진원인과 한미FTA 활용 방안	2007.3
07-006	중남미 신정부 출범과 시장 진출 방안	2007.3
07-007	북핵 사태 해결 이후 북-EU 경제 관계의 향방	2007.3
07-008	일본의 지적재산 강화전략 및 시사점	2007.3
07-009	엔화 동향 및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2007.3
07-010	한미 FTA체결에 따른 대미수출 유망품목 및 진출전략	2007.4
07-011	러시아의 WTO 가입에 따른 시장환경 변화	2007.4
07-012	2007년 美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본 한미 FTA 협상 평가와 시사점	2007.4
07-113	멕시코 수출. 산업 진흥제도(IMMEX/PROSEC)의 이해	2007.4
07-014	EU 가입 3주년, 신규 회원국들의 경제변화 추이	2007.4
07-015	중국기업의 한중 FTA 인식과 전망	2007.5
07-016	발칸국의 투자진출 여건 분석	2007.5
07-017	러시아 오일머니, 어디로 가고 있나	2007.5
07-018	WTO 가입 후 베트남 섬유산업 환경변화 및 우리기업의 대응전략	2007.6
07-019	대중수출 품목구조 변화와 주요 요인	2007.6
07-020	해외무역관에서 바라본 2007년 하반기 수출전망	2007.6
07-021	인도 소매유통시장 현황과 전망	2007.6
07-022	북중변경무역현황과 전망	2007.6
07-023	M&A를 통한 중국 진출 전략	2007.6
07-024	미래를 위한 준비, 중동의 탈석유화 정책	2007.6
07-025	중국 증치세 환급률 인하의 영향과 전망	2007.7
07-026	숫자로 보는 미국경제 현주소	2007.7
07-027	아세안을 잡아라1-아세안 주요시장 수출유망 품목	2007.7
07-028	중국투자기업 경영성과 평가와 전망, 그리고 한중 FTA - Grand Survey 2007	2007.7
07-029	사례로 보는 신흥시장선점 효과	2007.7
07-030	일본 통신판매 시장현황 및 한국기업 진출방안	2007.7
07-031	EU 화학물질등록승인제도(REACH)에 대한 현지 대응사례 및 시사점	2007.7
07-032	북미시장 핵심 소비계층,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2007.7

● 무공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7-001	2007년 지역별 진출확대 전략	2007.1
07-002	2007 미리보기	2007.1
07-003	2006년 중국 지재권 백서	2007.2
07-004	2006 외국인 투자주간 행사 결과보고서	2007.6
07-005	2006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7.6
07-006	유럽 완성차 기업의 미래형 자동차 개발현황 및 Tier1.2 동향 조사	2007.6
07-007	브라질 비즈니스 가이드	2007.6
07-008	중국투자실무가이드/증보판	2007.7
07-009	2007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환경 애로조사 보고서	2007.7
07-010	2007 외국인 투자기업 생활환경 애로조사 보고서	2007.7
07-011	일본의 국가 브랜드 육성전략	2007.7
07-012	중국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13	대만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14	일본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15	베트남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16	인도네시아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17	캄보디아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18	인도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19	태국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20	필리핀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21	방글라데시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22	말레이시아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23	미얀마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24	아랍에미리트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25	이집트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26	나이지리아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27	알제리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28	미국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29	캐나다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30	브라질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31	멕시코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32	독일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33	폴란드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34	체코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35	슬로바키아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36	헝가리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37	루마니아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38	터키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39	러시아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40	카자흐스탄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41	우즈베키스탄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42	2007 서울국제식품전, 2007 서울국제식품기술전 종합결과보고서	2007.7
07-043	주요국의 자원개발 규제현황	2007.8

● 설명회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7-001	2007년 세계시장 진출전략설명회	2007.1
07-002	Post-China 투자진출 전략 설명회	2007.3
07-003	한미 FTA를 활용한 미국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07.4
07-004	발칸국 투자유망 프로젝트 설명회	2007.5
07-005	중국 투자환경 이렇게 바뀐다!!!	2007.5
07-006	한미 FTA 활용, 산업별 대미진출전략 설명회	2007.6

무공자료 07-043

주요국의 자원개발 주요현황

발 행 인 | 홍 기 화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07년 8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엽곡동 300-9
(우 137-749)
전 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07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